

【 특 집 】

1900년 ‘강북’의 조선인  
- 『강북일기』에 나타나는 변경과 변경민 -

이 동 진\*

┃ 차 례 ┃

1. 서론
2. 강북행의 배경
3. 강북 민란(民擾)과 호적 수록
4. 호세 혁파에 관한 협정 체결
5. 의화단의 난 이후
6. 결론

국문초록

의병장 閔龍鎬는 1898년에 황국협회에서 활동한 후 그 공로로 1899년에 설립된 보부상 조직인 ‘상무사’에서 간부로 활동하였다. 그리고 의병을 해산한 후 압록강북안인 ‘강북’으로 갔던 경험을 인정받아 ‘강북’의 한인을 ‘귀화’시킬 목적으로 평안북도 都公事員에 임명되었다. 민용호는 1900년에 道社를 설립하고 각 군에 社를 설립하는 동시에 강북에도 16개의 社를 설립하였다. 이 과정에서 민용호는 ‘金承洙의 亂’을 해결하게 된다. 김승수의 난은 내부 파견원으로 강북의 한인의 신망을 샀던 김승수와 간도관리사로서 강북의 한인의 신망을 사지 못했던 李匡夏 사이의 충돌로 인한 것이었다. 이 사건을 통해서 강북의 한인과 한국 정부-적어도 관할 지방 정부- 사이에 갈등-보호가 아니라 수탈이 더 심한 관계-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민용호는 현지 관리와의 협상을 통해서 한인에게 부과된 ‘호세’를 혁파함으로

www.kci.go.kr

\* 경북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써, 자신이 종래의 정부 파견 관리와는 다르다-수탈하지 않고 보호한다-는 사실을 입증하였다.

그렇다고 민용호가 강북의 한인을 수탈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다. 민용호 또한 상무사의 설립을 빌미로 비용을 거두었고 이 비용은 상무사를 운영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었다. 민용호가 강북 한인을 상적의 형식으로 호적에 수록한 사실은 다른 자료에서 확인되지도 않고, 자료가 발견되지도 않는다. 그러나 그가 강북에 파견되었던 상황은 충분히 확인할 수 있다. 당시에 상무사가 준정부 조직으로서 활동했던 것은 사실이었으며 한국 관리가 강북에 파견되어 강북의 한인을 관할하려고 한 것도 사실이었다. 한국 관리의 강북 파견과 강북의 한인에 대한 관할은 전통 시대의 ‘인민’에 대한 관할권과 한청통상조약에서 인정한 ‘영사재판권(영사재판권은 개항장에서 적용되는 것이어서 강북의 한인의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과 ‘영사 업무’가 혼재되어 있었다. 강북일기는 강북 변경에서 살아가는 한인이 변경민으로서 국가, 민족, 지역이 중첩되는 유동적인 상황에 놓여 있음을 증언한다.

주제어 : 강북, 한인, 강북일기, 변경, 변경민, 영토, 인민, 수탈과 보호의 이중성

## 1. 서론

19세기 중반부터 만주와 연해주로의 조선인 디아스포라의 역사가 시작되었다. 두 지역으로의 디아스포라가 시작된 시점이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만주의 조선인 디아스포라의 역사에 관한 연구는 연해주의 조선인 디아스포라의 역사에 관한 연구와 비교해서 매우 미약한 실정이다. 이것은 물론 자료의 부족 때문이다. 만주의 중국 지방 당국은 연해주의 제정러시아 지방 당국과 비교해서 행정력이 훨씬 취약하였고, 이로 인해서 만주 조선인 디아스포라에 대한 기록도 연해주 조선인 디아스포라에 대한 기록에 미치지 못하였다.<sup>1)</sup>

1) 안동일본영사관이 개설된 1908년 이후 압록강 北岸(對岸, 右岸) 지역의 조선인에 대한 조사 자료가 급속하게 증가하였다. 대표적인 자료는 三浦稔, 『鴨綠江 上流 右岸 居住 韓人狀

초기 만주의 조선인 디아스포라에 관한 기록으로는 1872년에 崔宗範 등이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江北日記』가 거의 유일하다.<sup>2)</sup> 이 자료로 인해서 나중에 조선인들이 ‘서간도’라고도 불렀던 압록강 대안 지역에 정착한 초기 조선인 디아스포라에 대한 실상을 어느 정도 알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1902년에 ‘管理邊民事務(흔히 ‘서변계관리사’로 지칭되어 왔다)’ 徐相懋에 의해서 작성된 『邊界戶籍案』으로 인해서, 압록강 이북 지역(모아산면-간도면-신별면 등 8개 면 지역)에 정착한 조선인의 원래 고향과 연령 분포를 알 수 있다.

이 글은 지금까지 학계에 소개된 적이 없던 새로운 자료를 이용해서 압록강 이북 지역에 정착한 초기 조선인 디아스포라의 역사를 살펴보고자 한다. 새로운 자료는 1900년에 의병장 閔龍鎬가 商務社의 平北 都公事員으로 파견되어 압록강 대안 지역에까지 (분)사를 설치하면서 강북의 조선인을 ‘商籍’의 형식으로 호적에 수록한 보고서인 『江北日記』이다. 강북일기는 1947년에 발간된 민용호의 문집 『復齋集』 제5권에 수록되었다.<sup>3)</sup> 민용호가 쓴 강북일기는 최종범이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강북일기와 명칭이 같을 뿐만 아니라 같은 지역을 조사하였다.

1984년에 국사편찬위원회가 민용호의 유고와 복재집을 저본으로 하여 발간한 『關東倡義錄』에도 부록으로 「西征日記」, 「復齋詩文」과 함께 「庚子史實 江北日記」가 실려 있다.<sup>4)</sup> 그런데 1988년에 출판된 『국역 복재집』에 수

況 報告書(1909.1.29)」, 일본의 무성육해군성 편, 1989, 『일본의 한국침략사료총서』, 한국출판원.

- 2) 1977년에 최강현이 문화재관리국 장서각에서 필사본(李王家圖書之章)으로 발견하여 세상에 알려졌다. 류승주, 1978, 「조선 후기 서간도이주민에 대한 일고찰 : ‘강북일기’의 해체에 붙여」, 『아세아연구』 21-1, 297쪽.
- 3) 민용호는 1922년에 54세로 사망했는데 아우 성호가 그의 유고를 보관하고 있다가 해방 직후에 한학자 신사량에게 부탁하여 1947년 12월에 6권 3책으로 『復齋集』을 간행했다. 반질 직전에 화재로 인하여 소실하고 증간을 하지 못했지만 종종 몇 집에 미리 배포하였는데 그 가운데 오직 한 질만이 낙장 없이 전해지고 있다. 제1권에는 시 39수, 상소문 3편, 서 28통이, 제2권에는 일본공사관에 보내는 조회문 1통, 關東倡義錄 上, 제3권에는 관동창의록 중, 제4권에는 관동창의록 하, 西征日記, 제5권에는 강북일기, 서, 기, 행장, 발이 각 1 편씩 수록되어 있다. 민용호, 이태길·민원식 역, 1988, 『國譯 復齋集』, 昭文出版社, 4-5쪽. 이하 특별한 인용이 없으면 이 책을 인용함.
- 4) 강북일기의 원본인 『복재집』과 『경자사실 강북일기』는 모두 독립기념관에 소장되어 있

록된 강북일기와 『관동창의록』에 수록된 강북일기는 내용이 동일하지 않다. 전자는 후자의 내용을 축약한 것이다. 이 글에서는 중복되는 부분은 『국역 북재집』을 인용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관동창의록』을 인용할 것이다.

『강북일기』에는 강북의 조선인 디아스포라에 관한 지도와 호적안 등을 국왕에게 제출했고 하지만 이들 자료를 확인할 수 없어서 민용호가 작성한 호적안과 서상무가 작성한 변계호적안을 비교할 수 없다. 민용호의 활동은 국가의 공식적인 기구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어서 공식적인 기록에도 남아 있지 않다. 이 일은 민용호 자신이 비공식적인 라인-민씨척족-을 통해서 국왕의 재가를 받았으며 민용호 자신도 이 일을 관직에 나아가기 위한 활동으로 수행하였기 때문에 자신의 활동을 과장했을 가능성이 다분히 많다.<sup>5)</sup>

그러나 강북일기는 20세기 초기 압록강 대안 지역의 조선인 디아스포라를 기술한다는 점에서 중요할 뿐 아니라,<sup>6)</sup> 『변계호적안』을 제외하면 일관적인 자료가 거의 없는 실정에서 다른 자료의 신빙성을 검증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중요한 자료이다. 더욱이 『강북일기』는 강북의 한인 디아스포라 뿐만 아니라 의병(강릉의병),<sup>7)</sup> 보부상(도약소, 황국협회, 상무사),<sup>8)</sup> 향약(류인석) 등

다. 『경자사실 강북일기』는 한국독립운동사 정보시스템, 자료번호 1-001342-000(search.i815.or.kr/ImageViewer)에 있음.

- 5) 이상찬은 관동창의록과 행장에 나오는 민용호의 가계 기록을 여흥민씨족보 중 1889년 간행한 규장간 소장본, 1923년 간행본, 1973년 간행본과 비교하여 1973년 간행본과는 일치하지 않지만, 다른 두 족보와는 일치하지 않는 사실을 발견하고, 민용호의 가계가 조직되었음을 밝혔다. 1889년과 1923년 족보에 의하면 관동창의록에서 민용호의 생부라고 하는 민치겸은 진호, 상호, 종호, 사흥의 4형제를 두고 있으며, 민용호의 양부라고 하는 민치우는 1889년 족보에서는 딸 셋과 계자 周籀와 주호의 아들과 손자 3명이 기재되어 있고, 1923년 족보에서는 민치우의 계자로 진호, 진호의 아들 3형제, 그리고 장손자가 기재되어 있다. 1947년에 작성된 행장에 민용호의 동생 성호가 처음으로 등장하고, 1973년 족보는 민치겸의 아들을 용호, 성호, 주호, 인호, 흥호라고 하고, 민치우의 계자도 비로소 용호로 기록하였다. 이상찬, 1997, 『1896년 의병장 민용호의 실체』, 『규장각』 20, 19~21쪽. 그러나 1992년에 간행된 여흥민씨세보에서는 민용호의 본명이 민진호로 기재되어 있다고 한다.
- 6) 이 시기의 만주 지역 조선인 디아스포라에 대한 또 하나의 기록이 있다. 그것은 가린을 대상으로 하는 러시아인들이 두만강에서부터 시작해서 황해까지 수로가 있는지를 탐사하기 위해서 압록강 하구까지 탐방한 기록이다(N. G. 가린, 김학수 역, 1981, 『조선, 1898년 : N.G. 가린의 조선풍물여행기(하), 단대출판부. 이하 『가린여행기』). 1895년 단발령이 발하기 직전에 김구도 압록강 이북 지역을 답사하였는데, 『백범일지』에 기록되어 있다.

이 시기의 역사를 구성하는 다른 중요한 쟁점들과도 걸쳐져 있다는 점에서 또한 그 가치를 강조할 필요가 있다.

## 2. 강북행의 배경

민용호는 1869년 산청군에서 출생하여 1893년에 상경하였으며 1895년에는 여주에 있는 注書(승정원 정7품) 민병성의 서숙에서 교사로 있던 중 그해 8월 명성황후 시해 소식을 듣고 9월 16일 청림루에 통문을 붙였다.<sup>9)</sup> 10여 일 후에 여주목사와 아전 등이 관인을 버리고 도주했다. 11월 15일 단발령이 반포된 직후 11월 17일 宋炯淳 등과 문막을 거쳐 11월 29일 원주로 들어갔다. 12월 16일 강릉에 입성하고 관동창의소(총병력 2,300명)를 설치했다. 동월 28일 고종이 관찰사나 군수도 선임하여 처리하라는 칙령을 받았다고 한다. 1896년 8월 초순 100명 남짓 병력으로 영흥부를 거쳐 함흥에 입성하고 부전령을 넘어 삼수읍을 거쳐 9월 백두산 아래서 의병을 해산했다.

민용호는 崔文煥 등 5명과 작별하고, 700리를 걸어서 帽兒山에 도착했으며 다시 1,500리를 걸어서 통화현 칠도구에 도착하여 심양자사에게 진정서를 제출했다가 회답이 없자 11월 20일에 압록강을 건넌 뒤 자성에서 초산을 거쳐 12월 6일 태천에 당도했다. 민용호는 雲菴 朴文一의 강학소였던 경의재를 거쳐 誠菴 朴文五가 제자들을 가르치는 藏修齋에서 1897년 1월부터 의병일기인 『關東倡義錄』을 편찬했다.<sup>10)</sup> 이후 연태, 천진(원세개 육군독판역),

7) 민용호의 의병 활동에 대해서는 박민영의 연구가 있다. 박민영, 1990, 「강릉의병장 민용호의 생애와 거의 논리」, 『윤병석교수화갑기념 한국근대사논총』, 지식산업사; 박민영, 1991, 「민용호의 강릉의병 항전에 대한 연구」, 『한국민족운동사연구』 5.

8) 서진교, 1992, 「1898년 도약소의 성립과 활동」, 『진단학보』 73; 서진교, 1999, 「대한제국기 상무사의 조직과 활동」, 『한국민족운동사연구』 21.

9) 『국역 복제집』에 수록되어 있는 行狀에 의하면 민용호는 1886년 부친상을 치른 후 고리대업에 손을 댔다가 가산을 탕진하였고 산으로 피해 화전을 일구어 먹고 살다가 서울로 떠난 후 1894년 무렵 여주 민병성 가에 내려와 있었다. 이상찬은 그가 서울에서 보부상 활동을 하였을 것으로 추정하였다. 이상찬, 1997, 앞의 글, 22쪽.

여순(북양대신 宋慶 군영)을 거쳐 1897년 10월에 소환 조칙을 받고 천진에서 귀국했다(1~4쪽).

민용호는 류인석과 함께 소환 조칙을 받고 귀국했는데 이 과정에서 徐相懋가 등장한다. 소환 조칙의 내용에는 “의병을 일으킨 류인석·민용호 등은 북녘으로 들어간 지 해가 지났으니…특별히 참봉 서상무를 칙유사로 삼고, 참봉 金連植을 부칙유사로 삼노니, 북녘으로 가서 짐의 뜻을 유지하여 본국으로 소환하되…倡義士 류인석·민용호 등에게 유지하노라…”라고 하고 천진의 공사관에게 “관동창의대장 민용호가 북경에 있다하니 특별히 선유하여 인도하여 보내라”라고 했다(422~423쪽). 일찍이 아관파천 후 선유사가 각지에 파견되어 의병 활동을 중지시킨 후에도 류인석·민용호 등은 선유에 응하지 않고 의병 활동을 하면서 앞서거나 뒤서거나 하면서 압록강을 건너갔다. 류인석 부대가 초산 아이성(8월 28일에 초산진에 도착)에서 민용호보다 한달 앞서서 압록강을 건너갔다. 이 조칙이 조선 공사를 통해서 외부에 전달되고 다시 여순에 있는 북양대신 宋慶의 군영에 전달되었다.<sup>11)</sup>

이 조칙을 보면 서상무는 참봉 벼슬을 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나중에 보겠지만 민용호도 1900년에 참봉 벼슬을 제수 받았다. 민용호와 마찬가지로 을미의병장이었던 許葦도 1899년 3월에 永禧殿 參奉(원구단 참봉)에 임명

10) 『關東倡義錄』의 7편 편지(書)에는 박문일에게 부친 편지가 1897년 12월을 시작으로 가장 많이 수록되어 있다. 부친 편지에는 심상훈, 민영기(3통), 민병석, 그리고 동생 麟鏞, 成鏞(3통) 등에 대한 편지가 있다. 심상훈, 민영기, 민병석에 대한 편지는 대부분 강북에서의 성과를 알린 것이다. 이들에게 편지를 부친 것은 민용호가 강북에 파견되는 데 이들의 도움을 받았기 때문이다. 동생들에 대한 편지는 후술하겠지만 동생 柱鏞가 돌아가는 편에 부친 것이다. 민용호가 받은 편지도 수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는 1897년 11월 초5일에 부친 서상무의 편지도 있다. 『關東倡義錄』, 178, 207~208, 229~235, 237~238쪽.

11) 宋慶 군영에서 독판의 군영에 온 전보에 의하면 선유사 金連植을 대동구의 통령의 군영에 보내어 민용호의 주소를 찾고 있었다(421쪽). 김연식은 1896년부터 1898년까지 전개된 ‘討逆復讐’의 상소운동[忠勳府 소청에 都約所를 설치하고 활동함. 1898년 10월 25일에 도약소를 해산하라는 조칙이 내려짐]에 참가하였으며, 1903년 6~7월에 일어난 일본제일은 행권 배척운동, 1904년 6~7월의 보안회 활동, 12월에 정우회 활동[일진회를 성토하고 이 용익을 탄핵함], 1905년 을사조약 체결 후에는 13도유약소에서 조약 무효화를 위한 상소운동과 각국 공사관에 조약 무효를 주장하는 공한을 보내는 활동 등을 전개하였다. 서진교, 1992, 「1898년 도약소의 성립과 활동」 『진단학보』 73, 41, 43, 59~60쪽.

되고 다음 달에 성균관박사에 임명되었다. 이를 보면 의병장에게 곤살 참봉을 제수했음을 알 수 있다. 서상무는 제천 덕산면 선고리에 거주하다가 동학농민군을 진압하기 위하여 거병한 적이 있고 류인석을 따라 의병에 종사하였다.<sup>12)</sup> 서상무는 1897년에 서변계관리사로 제수되었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 출처는 밝혀지지 않았는데 후술할 것이지만 선유사 혹은 칙유사로서의 활동과 혼동된 것이 아닌가 한다.

류인석의 「答徐參奉金參奉書」를 보면 서상무와 김연식이 모두 류인석과 민용호를 선유하는 활동을 했다.<sup>13)</sup> 류인석은 1897년 8월에 고종의 초유문을 받고 귀국하였다. 김연식이 대동구 통령에 있는 군영에 와서 민용호의 주소를 찾았다. 이 내용이 전보로 육군독판의 군영에 전달되어 민용호가 귀국하게 된다(421쪽).<sup>14)</sup>

민용호가 어떠한 배경에서 강북에 파견되게 되었는가를 알기 위해서 강북일기의 기술을 따라가 보자. 민용호는 許薦 등이 창설한 皇國協會에서 활동했다.<sup>15)</sup> 민용호가 황국협회는 각 도의 보부상들을 불러 모아 독립협회에 대항했다. 보부상들은 손에는 나무몽둥이(木棒)를 쥐고 머리에는 패랭이를 쓰고 농상공부 대문 밖에서 수개월간 노숙을 하고 있었다. 10월 초에 상공국장 吉永洙를 13도 도반수로 임명하여 보부상들을 거느리게 했다.<sup>16)</sup> 민용

12) 출처는 『朝鮮輿輿勝覽』의 명망조와 후손 서정국에게 전하는 족보(家乘)이다. 박민영, 1998, 『대한제국기 의병연구』, 한울, 227쪽. 『국역 승정원일기』에 의하면 1987년 9월 28일 전 참봉 서상무 등이 “명의 제도에 따라 관제를 정할 것 등의 사무를 전달하는 상소”를 올렸다. 한국고전번역원, <http://ref.daum.net/item/6940320>

13) 1898년 1월 10일에 쓴 류인석의 편지이다. 여기에는 ‘湖關一旅’라고 하여 호서(제천)의진과 관동(강릉)의진을 확인할 수 있다. 관동창의록에서는 제천의진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였다(138쪽). 류인석은 편지에서 자신이 나중에 받은 고종의 글에 대한 불만을 나타냈다. 글에서는 “改悔하여 自首한 것은 매우 가상하다. 너희 죄를 특별히 사면한다”고 했다. 류인석은 痛迫이라고는 할 수 있지만 改悔라고는 할 수 없고, 陳情이라고는 할 수 있지만 자수라고는 할 수 없다고 했다. 柳麟錫, 1989, 『昭義新編』. 중앙출판문화사. 62~64쪽.

14) 현규환은 전거를 인용하지 않은 채 1897년에 서상무가 서변계관리사로 임명되어 서변계 한인을 보호하였으나 폭정이 심할뿐더러 소행이 단정지 못하여 이민의 처녀를 姦하기까지 하여 憤怨排斥하게 되고 관리정청은 설치한 지 1년도 못되어 폐지되었다고 했다. 현규환, 1967, 『韓國流移民史』上, 어문각, 139쪽. 현재 확인되는 최초의 기록은 民政部總務司調査課 編, 1933, 『在滿朝鮮人事情』, 24쪽이다.

15) 閔龍鎬 지, 국사편찬위원회 편, 1984, 『關東倡義錄』(이하 『關東倡義錄』), 120쪽.

호·허위·홍종우 등이 수백명의 보부상을 이끌고 독립협회 참가자들을 좌우에서 몰아서 대안문 밖에서 격파하고, 도망치는 사람들을 쫓아가서 몇 사람을 쳐 죽였다(430~431쪽).

1898년 11월에 전국에 상무사를 설치하여 뜻밖의 사태에 대비하였다. 상무사의 사장은 申基善, 부사장은 閔泳綺(사장과 부사장은 대신이 겸임), 사무장은 李根滿였다.<sup>17)</sup> 그 아래에 都公事員 1인과 掌務員 2인을 두어 13도의 사무를 맡고 여러 고을 공사원과 장무원들의 적임을 감시하게 했다.<sup>18)</sup> 공사원과 장무원 26명이 민용호를 제외하고는 모두 문무 3품 이상이였다.<sup>19)</sup> 상무사의 경비는 상표로써 온갖 물건을 세금으로 거두어 충당하였고 조정에서 관리를 임명할 때는 독립협회를 파괴하는데 공이 있는 사람들을 많이 등용하였다. 서울 안팎에 남북 2부와 60여 개 지사가 있었는데 남북이 서로 반목하였다. 이에 남북사가 서로 화해하게 하라는 칙명이 내려졌다. 민용호는 서생으로 복사의 회계(掌財)를 맡고 있었다(431~435쪽).<sup>20)</sup>

- 
- 16) 황국협회는 1898년 7월에 설립되었는데 회장은 李基東(법부민사국장), 부회장은 高永根이 담임했다. 鄭喬, 1957, 『大韓季年史』上, 국사편찬위원회, 234~235쪽; 서진교, 1999, 앞의 책, 66쪽.
- 17) 1899년 3월 16일에는 도사장 심상훈, 사장 민병석, 부사장 이기동, 도사무(사무장) 길영수, 부사무 朴有鎭, 金光熙 등이였다. 鄭喬, 『大韓季年史』下, 15쪽; 위의 책, 73쪽. 1899년 5월 9일에는 도사장 신기선, 旬管社長 민영기, 도사무장 이근호, 부사무장 이한영, 부사무 김광희, 李圭桓, 趙永淳 등이였다. 『皇城新聞』, 1899.5.9, 10; 위의 책, 73쪽.
- 18) 공사원과 장무원이 각 13명이 있어서 13도의 사무를 나누어 맡고, 다시 중앙 본사에서 각 도에 도공사원 1명과 장무원 2명을 파견하여 지방 지사를 점검하게 했다. 본사의 사장은 각 도의 관찰사인 분사장에게 훈령하고, 부사장, 사무장은 분사장과 상호 조회하게 하였다. 각 도에 파견된 도공사원은 분사장에게 보고하고 분사무장인 부윤, 목사, 군수 등과 서로 조회하게 하였다. 곧 상무사 간부들은 관리가 겸임하거나 관리와 같은 직책을 가졌다. 보부상의 우두머리인 13도의 明査長과 340여 군의 都接長 또한 본사에서 차출하였다. 『구한국관보』, 광무 3년 5월 15일자 「칙령제19호 상무회의소규례 개정건」; 위의 책, 72쪽.
- 19) 본사에는 사장, 旬管社長(농상공부대신이 겸임), 부사장, 사무장, 부사무(3명)을 두었고, 그 아래 사원으로 공사원, 장무원, 명사원, 재무원 등을 두었다. 위의 책, 71쪽.
- 20) 사무장 李漢英이 공사원을 선발하기 위해서 농상공부 안에 여러 사람을 모아놓고 성명을 써서 벽에 게재하고 오늘의 발탁은 논공이지 사사로운 것이 아니라고 하고, 공이 다른 사람의 이목에 두루 미친 자들의 이름을 크게 소리 내어 불러 사람들은 거수하였다. 공의에 맞지 않은 자는 말이 없었다. 이때 발탁된 자는 백에 둘 또는 셋에 불과했는데 민용호도 뽑혔다. 『關東倡義錄』, 127쪽; 위의 책, 70쪽. 상무사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기술

1899년 정월에 민용호는 공사원으로 평남 각 고을의 조직과 재무를 관장했다. 민용호는 한 집안인 閔丙奭(농상공부대신)을 만나서 자신이 삼수군에서 의병을 해산하고 맞은 편 강변에서 왼쪽으로 강을 따라 통화현 경계에 도착하니 1천 여 리나 되는 산골짜기에 사는 한인들이 몇 만 호인지 모를 정도였다고 하고, 이들을 호적에 수록함으로써 ‘두번째 벼슬길에 오르는 계책으로 삼고자 한다’는 뜻을 밝혔다(435쪽). 이에 민병석은 閔泳駿과 자신이 모두 평안도 감사(원문은 箕伯)로 있으면서 강북 한인들의 귀화를 도모했지만 실현하지 못했다고 하고 그것의 어려움을 다음과 같이 피력했다.<sup>21)</sup> “대체로 명령을 받아 간 사람을 묶어서 강에 던지거나 코를 베어 쫓아버리기도 하면서 조금도 거리끼는 바가 없었는데 이는 그들이 강 너머 먼 북쪽에 있음을 믿기 때문이었습니다. 조정에서 경영한지가 30,40년이 되어도 귀화하는 사람은 단지 강 연변이나 맞은 편 강가의 수천 호 뿐이었으며 그조차도 오늘 돌아왔다가 내일 돌아가는 실정이었습니다. 오직 뜻하는 바는 지금 李匡夏를 보내서 임금의 뜻(諭)을 알리려고 하는데 民情이 어그러지지 않는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435~436쪽).”<sup>22)</sup>

민병석의 진술을 통해서 ‘귀화’를 한 사람들이 압록강에서 인접한 지역의 사람들에 불과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 조정에서 이광하를 강북에 파견

---

하는 자료를 보자. “이한영이 서리사장이 되어 오래지 않아 다시 13도 명사장을 뽑고 340여군의 도접장을 뽑았다. 접장배들은 비록 관리를 거치지 않은 자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 탕건을 쓰고 玉圈子를 늘어뜨리고 관할하는 군에 가서 지사를 설치하고 章程價 10元, 印章價 10元을 상무본사에 바치고 각 군의 商民과 閑散之類로부터 負商 憑標[상표] 價를 받아 도접장 지사 비용으로 충당하였다. 이 때 負商의 명칭은 國中에 두루 차서 위로는 搢紳으로부터 士庶人 아래로는 隸賤에 이르기까지 부끄러움을 모르는 자들이 다투어 참여하고 무리지어 모여다녀 郡邑과 마을에 끼친 폐를 다 열거할 수 없다. 鄭喬, 『大韓季年史』 하, 23쪽; 위의 책, 70쪽. 다음과 같은 『皇城新聞』 기사도 있다(제2권 제173호). “일전에 상무사에서 340여 郡 都接長을 차출하였는데 이 접장은 비록 白頭儒者라도 탕건과 玉圈子를 쓰고 그 관할하는 군에 가서 지사를 설립하고....상무본사로 봉납한다는 데 慶源·鏡城 등처는 지역이 멀고 백성이 사나워서 이 군 접장으로 파견되려는 사람이 없었다한다.”

21) 민영준(1852년 출생)은 1887년에서 1889년까지, 민병석(1858년 출생)은 1889년에서 1894년까지 평안감사로 재직했다.

22) 『關東倡義錄』, 124쪽.

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광하의 강북 파견은 『皇城新聞』에 다음과 같이 게재되어 있다.<sup>23)</sup> “내부에서 이광하씨를 簡派하여 對岸6洞을 시찰케하는데 압록강 상하와 노인령 내외 천여리에 孤奇한 我民이 몇 만명인지를 조사하고 내지 여러 군을 순시하며 本界에 직접 가서 여러 폐단을 혁파하여 撫諭 安接의 策을 아래와 같이 務行케 한다. 인민의 疾苦를 제거하는 일, 호구조사 후 매 호 3兩씩 수납하는 일, 桶槽 수납을 금단하는 일, 無賴雜類가 清人과 符同하여 작폐하는 일을 일체 금단하는 일, 府郡 官吏의 侵虐 등을 엄금하는 일.”

민병석이 고종에게 민용호의 뜻을 전달한 탓에 드디어 1899년 8월 29일에 부름을 받았다. 元帥府로 가서 參將 李學均을 통해서 강북의 민정에 관한 글을 올리기로 했다.<sup>24)</sup> 민용호가 올린 글에 나타나는 강북민들의 목소리를 들어보자. “갑오년 이전에는 거주하던 곳이 맞은편 강변이어서 고국의 어느 군 어느 현의 지경을 가리키면서 자신이 어느 고을유랑민(원문은 某邑之屬民)이라 말하고 돈 3케미를 관청에 바침으로써 고국 그리는 정을 나타내면 관원들은 조정에 알리지도 않고 사사로이 자기 주머니에 넣어 버렸습니다. 올미년 이후로는 소식이 돈절해도 상관하지 않아 거의 두절된 백성처럼 되었습니다… 평양에서의 전투[청일전쟁]에서 청나라 사람들이 패배하여 도주할 적에 우리들을 위협하기를 너희들 수 만 명이 국경지대에 살고 있으면서 한국과 일본에 연락을 취하고 있으니 우리와 같은 의복을 입지 않는 자는 모두 본국으로 돌아가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들은 국가의 변란(원문은 變相)을 듣고… 왜놈처럼 되기보다는 청나라에 붙는 것만 같지 못하다고 생각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근자에 고국에서 ‘형편에 따라 시행하라’는 명령이 내려 이전의 옷과 갓을 다시 입고 쓴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23) 『皇城新聞』, 1899.6.1, 雜報, 「對岸調査」.

24) 이 글은 『關東倡義錄』의 6편 疎에 「因元帥府參將李學均及參領李漢英轉稟遼左遺民保護之策疎」라는 제목으로 실려 있다(204-206쪽). 『국역 고종순종실록』에 의하면 1899년 7월 25일에 副領 이학균을 원수부 검사국장으로 임명하였고, 8월 21일에 副領 이학균을 參將로 임명하고, 8월 24일 참장 이학균을 원수부 검사국장에 임명하였다.

민용호가 강북민(원문은 土人)들에게 “위로하고 효유하는 황제의 조칙을 받들고 와서 호적이 누락된 것을 거두어들인다면 그대들은 어떻게 대처하겠는가”라고 묻자, 그들이 “우리들 먼저 들어온 사람은 이미 3세대(三世)가 되었고 뒤에 들어온 사람도 이미 12년(一紀)이 넘어 비록 하루 아침에 철수해 돌아갈 수는 없다 해도 어찌 몇 꿩미의 돈을 아껴 版圖의 위에서 빠지겠습니까? …의리(義)로써 설득한다면(諭) 따르는 자가 십중 칠팔이 되겠지만 위력(威)으로 제지한다면 혹은 청나라 사람들을 피어서 연합 세력(和黨)이라 치칭하고 칼을 들고 나서게 될 것입니다.”라고 했다(438~440쪽).<sup>25)</sup>

위의 서술에서 1894년 이전에 강북의 한인들이 자신의 출신 고을을 말하고 맞은 편에 있는 관청에 세금을 납부하였으나 관원들이 착복하였으며 1895년 이후 민용호가 강북에 갔던 1896년까지는 한국 정부와의 관계가 거의 단절되었으며 강북 한인들도 단발령에 대한 저항이 강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한국 정부가 징세를 위해 강북 한인을 호적에 수록하기 위해서는 ‘의리’로써 설득해야지 만약 강제로 하려고 들면 강북의 청인들과 연합해서 저항하려고 하였음을 알 수 있다. 후술할 ‘강북 민란’이 그러한 저항의 하나였을 것이다.

민용호는 자신의 의견을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강북은 두 나라 국경지대의 공한지(交界遊間之地)로서 우리나라 백성들이 먼저 그 땅을 점거한 사람이 수만 명이니 어찌 한 사람의 사신을 아껴 은혜를 입지 못한 赤子를 그대로 내버려두겠습니까? 만일 지금 진압하고 위로하는 방책을 쓰지 않고 차츰 몇 해만 경과하면 그들의 자손들은 그곳을 고향으로 생각하여 다시 조국에 대한 생각이 없어질 것입니다. …강북 인정을 탐지하게 하고, 지척의 조칙을 받들고, 의리로써 설득하고(諭), 충효로써 격려한다고 하면 1년이 지나면 호적에 수록할 수 있고, 2년이 지나면 그 은혜를 베풀 수 있고, 3년이 지나면 그 권위를 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440~441쪽).”

민용호의 의견서의 요지는 자신이 강북의 한인들을 설득해서 호적에 수

25) 『關東倡義錄』, 126~127쪽에서 보충.

록시킬 수 있다는 것이었다. 의견서를 제출한 다음날에 (상무사) 사무장 李漢英이 “폐하의 면전에서 직접 직명을 받았는데 공을 평안북도 都公事員으로 임명하였으니 호적을 조사하여 강북 유랑민을 모두 우리나라에 따르도록 하라고 하였습니다. …공의 직위는 가법지마는 책임은 중하니, 곧 부임하도록 하고, 측근의 掌務員들은 비록 자신이 천거해 임용하되 또한 임금께 아뢰시오”라고 했다.<sup>26)</sup> 이에 민용호는 李中英과 閔泳夏를 측근의 장무원으로 추천하고 12월에 세 사람이 청천강을 건너 영변부로 갔다.<sup>27)</sup> 민용호는 자신이 평북 도공사원으로 임명되기까지는 농상공부대신 민병석, 사무장 길영수, (한성부) 판윤 이한영, 참장 이학균 등의 도움이 컸다고 생각했다.<sup>28)</sup> 분사장(관찰사 趙民熙)은 道社를 수리하고 민용호 일행을 맞이했다.<sup>29)</sup> 분사장이 민용호를 존중해 준 탓에 영변부에 두 관찰사가 있다는 말이 나오게 되고 각 군의 수령들이 영변부에 들어오면 먼저 도사부터 들렀다고 한다.

지금까지 민용호가 강북에 파견되는 배경을 살펴보았다. 이제 조정에서 강북민을 호적에 수록하려고 한 배경에 대해서 살펴보자. 1894년 청일전쟁의 패배로 청이 조선에서 물러났다가 1896년 6월 청은 朝鮮商務總董 唐紹儀를 파견하여 在韓清商을 보호하려고 했다. 그리고 11월에는 당소의를 총

26) 상무사가 1904년 3월 강제로 해체된 후 1908년에 설립된 보부상 단체인 동아개진회, 대동회상무국, 제국실업회, 대한상무조합본부 등의 임원 직명에도 공사원, 장무원의 명칭이 있었다. 동아개진회에는 명사원, 대동회상무국, 제국실업회, 대한상무조합본부에는 집사의 명칭도 있었다. 동아개진회 회장은 趙重應, 부회장은 趙民熙, 사무장은 尹錫天, 부사무장은 金光熙(제국실업협회 부사무, 1909년말 대한상무조합본부 부사무) 등이었다. 제국실업회 부회장은 閔元植(대동실업협회의 회장)이었다(제국실업회는 동아개진회와 대동실업협회가 합병한 것이다). 조계곤, 1988, 『대한제국 말기(1904~1910) 보부상 단체의 동향』 『북악사론』 5, 132~133, 140~141, 144~145쪽.

27) 이증영은 直閣 泰容의 아들이고 민영하는 동궁빈의 지친으로 민용호와 4종질간이었다. 『關東倡義錄』, 136, 183쪽.

28) 『關東倡義錄』, 128쪽.

29) 『국역 고종순종실록』에 의하면 조민회(1859년 출생)는 1899년 2월 2일에 副詹事에서 평북관찰사로 임명되어, 1900년 7월 22일에 전북관찰사 이완용 등 8개 관찰사와 함께 징계를 받아 면직되었다. 곧 징계를 면하고 궁내부특진관, 법무협관, 특명전권공사 겸임, 군부협관, 프랑스 주재, 미국 주재(1901), 일본 주재(1904), 육군 부령, 경남관찰사(1906), 비서감경(1907), 평리원재판장, 승녕부 시종장(1907), 승녕부 총관(1907)을 역임하면서 자형인 이완용과 함께 출세가도를 달렸다.

영사로 승격시켜 다시 조선에 파견하였다.<sup>30)</sup> 1898년 3월에 러시아와 여순과 대련을 조차하는 약정을 체결하고 동년 9월에 러시아가 관동주를 설정함에 따라서 만주에 대한 주권이 크게 약화된 상황이었다. 1898년 6월에 청에서 무술변법을 단행하였고, 동년 8월에는 조선에서 대한국국제가 반포되었다.

청은 동년 8월에 조선과 조약을 체결할 것을 결정하고 徐壽朋을 주차조선국흙차대신(강북일기에는 徐欽使라고 기술됨)으로 파견하여 10월 6일 대한민국 대황제 국서를 준비하였다가 '민회운동'으로 조선 내정이 혼란스럽다고 판단되어 연기하고, 이듬해 1월에 다시 서수봉이 한성에 도착하여 조약 체결을 추진했다. 이 당시 조선에서는 '청을 쳐서 요동과 만주를 차지해 보자'라는 주장도 등장하여 청을 야만이자 '식민'의 대상으로 보는 문명 담론이 팽배해 있었다.<sup>31)</sup>

1899년 1월 28일 국서봉정식 거행을 위한 예비회담이 청국공관에서 개최하고, 30일에 서수봉이 신임장 사본을 외부에 전달하였는데 이날 자 『제국신문』 논설에서는 한청간의 협의해야 할 과제와 안건을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장백산과 토문강을 교계할 일, 월강한 백성들을 데려올 일, 압록강에 청국선들이 통행하는 일, 청국인이 서해연안에서 어채하는 일, 강변 읍의 산에서 재목을 함부로 간벌하는 일, 관서 7군과 북해 6진에 향마적을 토멸하는 일, 청국인이 연해변의 개항하지 않은 항구와 각 외항 및 내지의 장시에 잠행하여 무역하는 일, 청국인이 토지와 가옥 등 부동산물을 사사로이 매매하는 일. 그리고 선교사 외에는 내지 잡거를 금지하는 일.<sup>32)</sup>

1년 이상을 끌던 한청통상조약이 1899년 9월 11일에 드디어 체결되었다. 조약문에는 영사재판권을 상호 인정한다는 조항이 있어서 육로통상조약이 체결되어 혼춘과 안동에 각각 영사관이 설립되게 되면 이 지역에 거주하는

30) 당소희는 1883년에 설립된 동문학과 1886년에 설립된 육영공원 교사를 역임했다.

31) 『독립신문』 1899.12.21, 잡보; 은정태, 2005, 「1899년 한청통상조약 체결과 대한제국」 『역사학보』 186, 34~35쪽.

32) 위의 글, 41쪽.

조선인의 재판권에 대한 귀속 문제가 발생할 수 있었다. 한청조약 협상 직전에 내부는 越壑 한인의 수와 각종 폐단을 파악하여 이들을 보호하도록 관리를 파견할 것을 평안북도 관찰사에게 지시했다.<sup>33)</sup> 강북일기에 보면 내부 파견원이 金承洙였음을 알 수 있다. 민용호를 도공사원의 신분으로 강북에 파견한 것도 강북의 한인을 보호하기 - 관할권을 행사하기 - 위한 것이었다.<sup>34)</sup>

### 3. 강북 민란(民擾)과 호적 수록

다시 강북일기의 기술을 따라가 보자. 1900년 정월에 고을 안에서 공정한 선비를 두루 찾아서 公掌으로 임명하였다. 그리고 道社에서 <社規> 30권을 인쇄하여 각 고을에 반포하였다. 평안도(西土)의 풍속을 개량하기 위한 목적으로 각 공장을 시켜서 각 면에서 문벌과 덕망이 있는 한 사람씩을 뽑아 正倫明査員이라는 사령장을 주고 폐백을 미리 들이는 일, 부녀자가 치마를 입지 않는 일, 과부를 납치하는 일, 사각건을 쓰는 일 등과 같은 오랑캐 풍속이 우심한 것부터 먼저 철저히 고치고, 혹 이에 따르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조리를 돌리는 일을 관장하게 하고, <정륜편> 300권을 각 사에 배부했다.

정월 27일에 위원·초산에서 온 사람으로부터 강북에서 민란이 일어났으며 그 원인은 이광하가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소식을 들었다. 민용호는 강북에 社[상무사]를 설치하는 방책을 강구하면서 <강북장정> 20여 권을 간행하였다. 3월에 진사 李東翼과 종자 1명을 시켜서 문서를 가지고 강을 건너가 먼저 노인령에 살고 있는 친구와 연로한 분들을 먼

33) 『독립신문』 1899.1.16, 잡보, 위의 글, 41쪽.

34) 외부독판 김윤식과 원세개, 이홍장 사이에서 ‘借地安民’이 논의되었다가 1887년 5월에 김윤식이 유배를 당하게 되어 중지되었다. 秋月望, 1989, 『朝中勘界交渉の發端と展開：朝鮮側の理念と論理』 『朝鮮學報』 132.

저 깨우치게 하였다. 또 金貞燮 宣傳(官)으로 하여금 위원·초산·창성·벽동 등지에 가서 사를 설치하게 했다. 3월에는 민영하로 하여금 강계·후창·자성 3군에 사를 설치하게 하였다. 분사장이 각 군에 훈령을 내리기를, “우리 사 도공사원이 갈 것이니 지금부터는 각 군 수령들이 강을 건너 침범하지 못할 것이다. 앞으로 강북 백성들(江北民人)의 민사형사를 막론하고 도공사원이 전담 관장할 것이다”라고 했다(449~451쪽).

4월 2일 분사장이 내지의 일은 두 장무에게 맡기면 내가 도울 것이니 빨리 강북으로 가서 민심을 수습할 것을 청했다. 이에 민용호가 “강북 백성들이 관리들의 가렴주구를 겁낸 지가 오래 되었으니, 오늘 건너가서 내일 사의 경비를 백성들에게 거둔다면 이는 사나움으로써 사나움과 바꾸는 것입니다. 듣자니 아홉 고을의 소금 운반세로 영변부에 수입되는 것이 몇천 켤미에 불과한데, 외지의 어업 이득은 여러 만 켤미가 된다하니 이것을 도사로 보내어 이번 걸음의 비용으로 쓰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여 조민회의 승낙을 받았다.

4월 17일에 민용호가 회천을 거쳐 강계에 도착했다. 며칠 동안 묵고 있으니 이광하가 새로 초산군수로 부임하여 강북을 겸하여 관할하고 있다고 어떤 사람이 알렸으며 강북 백성들의 상황을 탐문하니 짐을 짊어지고 밭 갈기를 그만두고 탄식하고 있다고 했다. 민용호가 분사장에게 편지를 했다. 4월 19일 김정섭이 어제 강을 건넜다는 것을 듣고 사람을 시켜서 빨리 돌아오게 했는데 그가 말하기를 “지금 백성들이 초산군수와 서로 책망하고 있으니 일이 크게 벌어지면 반드시 선동했다는 화를 면하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20일 高山坊에 나가서 강을 사이에 두고 앉아 소식을 전해 들으니, 압록강원문은 長江의 상하에서는 선동하고 있고, 노인령안에서는 자신들이 외딴 먼 곳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다행으로 여기고 있었다. 27일 저녁나절에 초산군수 이광하가 서신을 보내어 “金承洙가 강북의 난민 수천 명을 이끌고 무단히 소요를 일으키고 있다”라고 하고 바로 초산성으로 와 달라고 했다.<sup>35)</sup> 민용호가 사정을 알아보니 철산군의 관리로 내부의 파견을 받고 강북

(원문은 江左)에 들어온 김승수가 민심을 얻었는데, 그 후에 視察로 파견되어 온 이광하가 김승수에 미치지 못해서(토색질이 심했으므로) 서로 사이가 틀어졌다고 한다.<sup>36)</sup>

민용호의 기술에 의하면 김승수의 난(강북 민란 또는 楚山 민란이라고도 불림)의 배경이 되는 사건은 지난 가을에 발생했다. 곧 “전임 초산군수가 교졸을 시켜서 강을 건너 총으로 김승수의 왼쪽 눈을 쏘아 다치게 하였고 유탄이 그의 두 다리를 관통하였다(1899년 초에 구 초산군수가 校卒 80명을 도강시켜 김승수를 체포해 갔다). 이에 강변 백성(江民) 수백명이 초산성에 쫓아오니 초산군수는 두려워서 그를 내어주었고, 백성들은 그를 신고 돌아가서 자원해서 그를 지키는 포수들 수십명이 2년 동안 잠시도 그 곁을 떠나지 않았다(이후 자원해서 김승수를 지켜 주는 포군이 10명에 달했다).” 민용호는 김승수를 평가하기를, “김정섭과 더불어 바람에 머리 빚고 비에 목욕하는 고생을 같이 하면서 마음이 철석같아서 그릇된 일로 유혹하기 어려운 사람이다(455~456쪽).”라고 했다.<sup>37)</sup>

집사(상무사의 직원)가 급히 와서 강북사람들이 매호마다 쌀 한말을 지고 초산성에 모이겠다는 뜻으로 서신을 전하니 청나라 사람들도 그들을 돕겠다고 한다는 말을 전했다.<sup>38)</sup> 이에 민용호가 초산으로 출발하여 29일에 초산 新道市에 도착하니 읍까지의 거리가 10여 리였는데 포성이 은은히 들리고 백성들은 모두 난을 피해 사방으로 흩어졌다. 민용호가 초산군수에게 “강북

35) 이광하는 11일에 서울을 출발하여 16일에 영변부에 도착하였고 20일에 영변을 떠나 25일에 초산에 부임하였다. 전임 초산군수가 창성군수로 부임하였는데 임지에 가기 위해서 수로를 따라 내려갈 때 김승수와 金宣傳(金貞燮)이 500~600명 강북 난민배를 이끌고 창성군수를 공격하였으며 다음 날 김선진이 700여 난민을 이끌고 초산성을 향하고, 김승수는 강북 車渠溝에 머무르면서 모병을 하였다. 강북 한인이 전임 초산군수에게 원망하는 것은 戶布 850兩이었다. 『關東倡義錄』, 140, 142쪽.

36) 『국역 고종순종실록』의 기록을 보면 이광하는 단 한건이 검색된다. 1903년 7월 5일에 한성부재판소 검사시보 이광하를 중추원의관으로 임명하고 직임판 4등을 주었다. [http://libproxy.knu.ac.kr/3bbc32d/Lib\\_Proxy\\_Url/www.koreaa2z.com/](http://libproxy.knu.ac.kr/3bbc32d/Lib_Proxy_Url/www.koreaa2z.com/)

37) 팔호 안은 『關東倡義錄』, 143쪽.

38) 그는 명령을 받들어 淸官 王懋忠의 家에 간 길이었다. 『關東倡義錄』, 141쪽. 왕무충은 나중에 다시 자세하게 나온다.

백성들이 공이 다시 강북을 관할한다는 말을 듣고는 …농사를 지어도 먹지 못하니 한번 죽음을 각오하고 싸우는 것만 같지 못하다고 말하고 있다 하니, 이로부터 강변 일대의 家戶 수가 반이나 빌 터인데 강북사람들의 귀화하고 있다고 거짓 보고하여 이와 같은 왕명이 내렸은즉, …마침내 관인을 버리고 도망쳤으니 청나라 관리들에게 부끄럽지 않으며 왕명을 욕되게 하면서까지 다시 부임했는가?”라고 했다.<sup>39)</sup> 이에 초산군수가 강북관리사 사무를 민용호가 전담하여 대행하게 했다. 이광하는 이것을 문서로 기록하였는데, 광무4년 경자4월 그믐 초산군수 이광하라고 기명 날인하고 마패와 초산군관인을 민용호에게 양도했다.

다음날인 5월 1일 아침에 민용호가 말 한 마리와 동자 한 사람을 데리고 강을 건너갔다. 민용호가 거구(車溝)에 도착하여 다행히 한인(我人)을 만나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民會)을 물으니 초산군수의 탐정으로 의심하여 대답해 주지 않았다. 이윽고 한 청나라 사람(淸人)이 절을 하면서 말하기를 의병에 참여했다가 아직 돌아가지 못한 군졸이라고 했다.<sup>40)</sup> 그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여기서 멀지 않다고 하고 각지에서 병기를 들고 모여들었으며 청나라 사람도 섞여 있다고 했다. 길림 경계의 湯河에서 老人嶺에 이르기까지의 내외 및 압록강의 상하에 살고 있는 모든 동포들이 모두 김승수 무리에 참가하고 있다고 했다(463쪽).<sup>41)</sup>

조그만 재를 넘으니 각지의 우두머리(頭民)들과 김승수가 운막 속에 있었고 좌우에 노숙하고 있는 사람이 수천 명이어서 완연히 군문과 같았다. 먼저 성명을 통했더니 호각소리 세 번 울리자 좌우에 대열이 늘어섰다. 민용

39) 이광하는 작년 가을에 강북 한인들에 의해서 쫓겨났는데 馬牌만 가지고 도망을 쳤다고 한다. 『關東倡義錄』, 142쪽. ‘마패’는 내부시찰 등으로 파견될 때 내부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시찰 업무가 끝나면 내부에 반납해야 했다. “동래감리 이명익씨와 경복시찰 유당씨의 마패를 재작일에 내부로 봉납하였다한다(『皇城新聞』, 제2권 제173호).”

40) 청인이라고 한 것은 그가 청인의 복식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1872년에 쓰여진 『강북일기』에서는 이러한 사람들을 ‘가짜 오랑캐(假胡)’라고 불렀다. 이동진, 2005, 「1872년 ‘강북’의 조선인 사회 : ‘강북일기’에 나타나는 민족, 국가, 지역」, 『북방사는총』 8.

41) 당시로서는 탕하에서 노인령까지의 내외 지방과 압록강의 상하 지방이 ‘강북’의 범위임을 알 수 있다.

호는 김승수를 설득하면서 “초산군수가 이미 강북관리사의 직책에서 해임 되었으니 비록 공을 해치려고 해도 그 형세가 어찌할 수 없을 것이다. 공이 빨리 군대를 해산하면 머리를 보장해주겠다”고 하고, 초산군수의 포고문을 내어보였다. 그리고 “나는 이미 강북 백성들의 호적을 수록하라는 칙명을 받았고 또 화해시키라는 뜻의 폐하의 간곡한 유시가 있었다”고 했다(464쪽). 이에 김승수가 울면서 “공이 이미 담보를 해 주었습니다. 3척의 강북민(北萬民)이 모두 내말을 듣습니다. 인성은 선하고 인정은 하나입니다.”라고 하고 ‘변경 관리(邊吏)의 탐학’을 이유로 들어 강북민이 도강하고 다시 귀국하지 못하고 있는 사정을 변명했다. 이에 다시 민용호가 강북민을 ‘曉諭’하는 뜻을 전달했다.<sup>42)</sup>

민용호가 “자기 백성(民人)을 보호하는 것은 만국이 하나이고 항차 ‘청한 공법’이 있는데 청의 군자가 어찌 불가하다고 하겠는가”라고 하고 지금 상무사를 설치하고 문명의 계를 조직하려고 한다고 하고 <강북장정>을 보여 주었다.<sup>43)</sup> 민용호는 자신이 현재 상무의 명을 가지고 商籍으로 戶籍을 수록한다고 하고, 호주에게 明事員 수첩 하나를 주겠는데 수첩 대금이 3궤미(緡)이고 이는 학교와 사의 운영 경비로 장정(강북장정)에 기재되어 있으며 道社의 수입이 아니라고 했다. 다만 봄과 가을 두 차례 ‘戶稅’ 3궤미를 정부에 납부해야 하지만 내지의 元戶와 夾戶의 예를 모방하여 2戶로 1戶 役을 삼는다고 했다.

민용호는 강북민(또는 민회)의 司命을 상무사의 公掌으로 임명하고, 사의 공장이 내지의 풍헌·집강[면에서 호적과 공공사무를 담당한 직책으로, 면인, 풍헌, 약정, 존위, 권농, 집강, 도유사 등으로 불렸음]과 같다고 했다. 그리고 민사와 형사사건은 모두 사내의 가장 현명한 사람을 두루 추천하여 공장과 같이 처리 하라고 했다.<sup>44)</sup>

42) 위의 책, 144~145쪽.

43) 위의 책, 145쪽.

44) 위의 책, 152쪽. 한인촌의 재판 풍경을 가린의 여행기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가린 일행이 조선인 마을에서 촌장이 재판을 하는 광경을 목격했다. 피고는 조선인 여인이었고 그녀

민용호가 “우리 동포가 청나라 사람 사이에서 섞여 살고 있으니 어찌 지명을 정하지 않겠는가? 그러므로 정치를 처음 베푸는 날에 지방을 나누어 이름을 정하여 공무 수행에 편리하게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니, 백성들이 말하기를 “이것은 수백년 동안 버려진 땅의 백성들이 비로소 입적하게 되는 것이다. 백두산 아래에서 회인현에 이르기까지 강변 1천 여 리에 단지 도구(道溝, 몇 번째 골짜기)라는 이름 위에 1에서 9까지의 숫자만 붙인 것은 양쪽 등성이와 골짜기가 강개면으로 향하여 구(溝, 도랑, 골짜기)를 이룬 것을 말할 뿐입니다. 또 강변으로부터 2백여리를 가면 파저강(巴只江)과 노인령(老人嶺)인데 영 안에는 우리 백성들이 더욱 많고 또 길림지방의 서대령(西大嶺) 아래를 탕하(湯河)라고 이르는데 거기도 우리 백성들이 많으며 여기와의 거리가 8백리인데 지금 모두 이 모임에 참가하고 있습니다”라고 했다(467쪽).<sup>45)</sup> 이에 민용호가 삼수대안에서부터 백성들이 가리키는 바에 따라서 지형이 생긴 대로 사의 경계를 정하여 다음과 같이 이름을 붙였다.

는 “중국 땅에서 산삼을 캔 후 좋은 것은 팔아버리고 나쁜 것만 조선 정부에 내놓았다”는 죄(산삼은닉죄, 역적죄)로 기소되었다. 촌장은 그녀를 감사에게 넘기겠다고 위협하면서 강압적인 수단을 사용하여 자백을 강요하였다. 가린은 “중국 땅도 조선의 임금에게 속해 있느냐”고 물어보게 했고, “그러나 그는 조선 사람입니다”라는 대답을 들었다. 이에 가린이 “하지만 중국 국적을 가지고 있잖소?”라고 물었고, “그 사람의 형제는 여기(조선 땅; 필자) 살고 있습니다”라는 대답을 들었다. 다시 가린이 “그럼, 만일 중국 황제가 산삼을 국고에 수납하라고 요구한다면 중국에 사는 조선인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라고 묻자, “산삼을 캔 필요가 없겠지요”라는 대답을 들었다(『가린여행기』, 123~125쪽).

- 45) 1872년 최종범 일행이 정탐할 당시는 압록강과 波瀾江(渾江, 민용호의 강북일기에서는 巴池江) 사이의 지역이었다. 두 강 사이에는 큰 재(大嶺, 민용호의 강북일기에서는 노인령)가 있고 이 재에서 압록강쪽으로 난 골짜기를 ‘道溝’라 하고 그 지역을 ‘嶺前’이라고 하고, 파저강쪽으로 난 강을 ‘頭江’이라고 그 지역을 ‘嶺後’라고 했다. 영전은 후창 대안(7도구), 자성 대안(2도구)이고, 영후는 파저강(8두강에서 4두강), 탕하 유역이었다. 영전의 두도구(통화현성) 이하에서 당동까지는 가지는 못했지만 조선 땅에서 볼 수 있는 지역이었고, 3두강 아래에서 초두강까지는 마적 때문에 가지 못했다. 당시에 도구 지명은 모두 조선명인 동이라는 명칭이 있었지만 두강 지명은 조선명이 없으며, 영전 지역은 마록포와 고려성을 제외하면 모두 동 명칭이 있지만(도구를 제외하면 동 명칭만 있었다), 영후지역은 삼천동을 제외하면 모두 동 명칭이 없었다. 다시 영전과 영후는 동, 서의 두 ‘會上’으로 구분되어 모두 4개의 회상이 있었고, 도회두는 영전은 모두 조선인이 담당할 반면에 영후는 모두 중국인이 담당하였다. 회상은 조선의 면에 해당하고 도회두는 풍현, 회두는 이면에 해당하였다. 이동진, 2005, 앞의 글, 301~302쪽.

〈표 1〉 압록강 대안 지역의 상무사 명칭

삼수군대안	拜韓社
후창계대안	延化社
자성중강대안	帽山社
강계대안	皇城社, 蓮上社, 蓮下社
위원대안	水上社, 水下社
초산벽동대안	新上社, 新下社
老人嶺內 및 巴池江 좌우	新興社, 昌龍社, 長化社, 慕華社, 小華社
吉林界	湯河社

출전 : 민용호, 이태길 · 민원식 역, 1988, 『국역 복제집』, 소암출판사, 467쪽.

강북일기에는 이미 강북에 조선의 행정구역이 설치되어 있었다는 기술이 없다. 1935년에 만주국 주재 일본대사관이 발행한 『在滿朝鮮人概況』을 보면 1881년에 평북 관찰사가 정부의 명령을 기다리지 않고 압록강 북안 지역을 28개 면으로 구획하고 강계·초산·자성·후창의 각 군에 분속시켰다고 한다.<sup>46)</sup> 1881년은 청이 寬甸(六甸)·懷仁(六道河)·通化縣(頭道江)을 설치한 지 3년이 지난 시기였다.<sup>47)</sup> 그리고 1889년에는 면을 폐지하고 합하여 강계군 11면, 자성군 4면, 초산군 7면, 후창군 2면으로 분속시켰다.<sup>48)</sup> 각 면의 명칭은 다음과 같았다.<sup>49)</sup>

46) 在滿日本大使館, 1935, 『在滿朝鮮人概況』, 23쪽.

47) 청은 처음에 압록강 북안 지역을 ‘東邊外地’라고 불렀다. 이 지역에 최초로 설치한 행정구역은 1876년에 설치한 鳳凰城直隸廳(鳳城)과 安東縣(大同溝)이었다. 손춘일, 1997, 「청대 강북의 개척과 한인에 대한 토지정책」, 『청계사학』 13. 1877년에 회인·통화를 변외북로로 하여 興京招撫同知가 관할하고, 안동·관전을 변외남로로 하여 봉황직예청에 소속시켰다. 牛丸潤亮·村田懋磨, 1927, 『最近間島事情 附 露支移住鮮人發達史』, 朝鮮及朝鮮人社, 83쪽; 김득황, 1973, 「간도영유권 분쟁시기에 있어서 청의 서간도 개발경영」, 『백산학보』 15, 182쪽.

48) 또 다른 자료에는 벽동군 24면이 추가되었다. 滿洲帝國民政部總務司調査課, 1933, 『在滿朝鮮人事情』.

49) 이 자료는 『韓國流移民史上』에서도 출전을 밝히지 않은 채 기술되어 있다(139쪽). 청의 지명을 보면 한인촌이 溝, 江, 甸子, 河, 泉(子) 등과 같이 주로 골짜기 지역이었음을 알 수 있다.

〈표 2〉 1889년 압록강대안 한인촌의 행정구역

관할 군	소속 면 명칭
강계군	新兵堡(興京), 大荒(大荒溝), 小窠(洞溝), 八道江(八道江), 九龍(麻泉溝), 泰平(太平溝), 檢(檢?)樹(柳樹林子), 新上(大清溝門子), 新下(冷水甸子), 福江(江甸子), 蘆靑(拉古子)
초산군	鴻生(帽兒山), 流淸(七十二道溝河), 葦沙(葦沙河), 祥和(三道溝)
자성군	雲山(外岔河下流), 雲下(外岔河上流), 蓮上(二股流), 蓮下(雙岔河), 橫道(橫道泉), 邱山(馬鹿吻門), 央道(冷水泉子)
후창군	水上, 水下

출전 : 在滿日本大使館, 1935, 『在滿朝鮮人概況』, 4쪽.

주 : 괄호 안은 청국의 지명임.

이 행정구역 명칭과 상무사 명칭을 비교해 보면 삼수·후창 대안의 배화사·연화사가 수상면·수하면에 해당되지만, 상무사 명칭으로서의 수상사·수하사는 위원 대안으로 되어 있다. 자성 대안의 모산사는 운상면 등 7개 면에 해당되고, 강계 대안의 황성사·연상사·연하사는 신병보면 등 11개 면에 해당된다. 초산 대안의 신상사·신하사는 모아산면 등 4개 면에 해당된다. 자성 대안과 강계 대안의 면이 많은 것은 이 지역에 조선인의 수가 많았거나 파저강과 노인령 좌우의 4개 사와 길림경계 서대령 아래의 탕하사 등을 포함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1889년에 어떠한 상황에서 면이 설치되었는가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았다.

『在滿朝鮮人概況』에서는 1897년에 서상무를 서변계관리사로 파견하여 통화현은 팔통면 외 11면, 환인현(회인현을 개칭)을 상화면 외 11면, 관전현을 수상면 외 3면, 흥경부를 왕청면 외 1면으로 분할하였고, 당시 이 지역에 거주하는 조선인이 8,772호, 37,000명이었다고 한다.<sup>50)</sup> 그런데 위 자료를 출처를 밝히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신빙성이 의심스럽다. 이는 다음과 같은 신문 자료에 의해서 확인이 가능하다. “벽동·초산·위원·강계·자성·후창 6읍은 근년 이래로 강북대안에 잠시 거주하는(流寓) 민인이 거의 만여호인데, 각기 부근 6읍 지방으로 호적을 수록하며(收) 사송을 접수하였다(廳). 금년에

50) 在滿日本大使館, 1935, 앞의 책, 24쪽.

처음으로 정부에서 파송한 江北大員이 위원에 체류하면서 수상·수하에 있는 유민을 관할하여 호포를 징수하며(擄), 민송을 재결하는데(裁) 벽동대안은 위원에서 거리가 300여 리이고 후창대안은 위원에서 거리가 400여 리나 떨어져 있으므로 대안 주민들이 납세와 소송에 여비(路費)도 자못 많을 뿐 아니라 농번기에 방해가 되고 공과 私에서 시간을 빼앗기는 일이 한 두 번이 아니다. 해당 부근지방관에게 관할이 돌아가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해당 민인들이 설명하였다.”<sup>51)</sup>

이 기사는 1899년 6월 이광하가 강북관리사로 파견된 것이 최초의 파견이었으며, 이광하가 실은 강북에 주재한 것이 아니라 위원에 체류하여 강북한인을 관할하였기 때문에 위원에서 멀리 떨어진 벽동대안과 후창대안의 한인들은 위원에까지 오느라고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들었고, 한국 정부의 강북 한인에 대한 관할권은 호포 징수와 소송 재결이었음을 말해 준다. 또 하나의 단서를 찾자면 강북 한인의 거주 지역을 수상과 수하로 구분하고 있다. 다른 행정구역 명칭은 나타나지 않는다. 1889년 행정구역 명칭으로 후창대안의 수상면과 수하면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다만 민용호가 설치한 상무사의 사 명칭 중에 수상사와 수하사가 위원대안이었던 것과도 다르다. 그러나 후술하겠지만 수상사와 수하사가 전체 사 중에서 상당히 중요한 위치에 있었다는 점에서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는 할 수 없다.

1900년 7월부터 102년 3월까지 평북관찰사를 역임한 이도재는 강북의 면을 연강 각 군에 배속하여 관리하면서 후창군 소속이 구도면, 팔도면, 칠도면, 육도면, 자성군 소속이 모산면, 위사면, 유청면, 상화면, 강계군 소속이 대화면, 소황면, 신상면, 신하면, 구룡면, 志淸面, 북강면, 태평면, 초산군 소속이 양도면, 운상면, 운하면, 연상면, 연하면, 구산면, 횡도면, 신상면, 신하면, 태평면, 유수면, 벽동군 소속이 수상면, 수하면이었다고 한다.<sup>52)</sup> 면의 명칭은 1889년의 상황과 거의 같지만, 소속 군의 명칭은 많이 다르다. 단적인

51) 『皇城新聞』 1899.12.19, 雜報「對岸民願」.

52) 위의 책, 139~140쪽.

에는 수상면과 수하면이 1889년에는 후창군에 소속되었는데, 1897년은 벽동군에 소속되었다. 두 군은 신문 자료에서 보았듯이 압록강변의 6개 읍 중에서 가장 떨어져 있는 군이다.

1902년 임강현과 집안현을 설치할 당시의 압록강상류 우안의 한인의 경우에 임강현 내에 신별, 대진, 강별, 간도, 용성, 팔도, 모아, 철도, 천금, 구도 등 10개 면, 집안현은 대황, 소황, 구룡, 태평, 신상, 신하, 유수 등 7개 면, 통화현은 복강, 노당, 팔도강 등 3개 면이 있었다. 임강현내가 13,752명, 집안현내가 10,242명, 통화현내가 3,667명(팔도강면의 통계는 없음이었다).<sup>53)</sup> 이 행정구역을 1889년의 행정구역과 비교하면 강계군 대안의 11개 면 가운데서 7개 면이 모두 집안현으로 되고, 팔도강(팔도), 복강, 노당이 통화현으로 되고, 초산군의 모아(모아산), 자성군의 구도(구도천)가 임강현으로 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강계군의 신병보, 초산군의 3개 면(1897년 회인현 상화면을 포함), 자성군의 6개 면, 후창군의 2개 면(1897년 관전현)은 어떻게 되었는지 설명하기가 어렵다.<sup>54)</sup> 이를 보면 1889년과 1897년의 행정구역 명칭이 일관성을 결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902년의 행정구역 명칭은 『邊界戶籍案』의 모산, 신별, 간도 등 명칭이 일치하므로 그 신병성이 입증되었다. 따라서 행정구역이 의미가 있는 것은 1902년의 자료가 아닌가 한다.<sup>55)</sup>

그런데 이 자료는 1903년 5월에 楊枝達, 金尙洽 등 현지 유지시찰단의 순방 때 압록강대안에 있는 조선인 거주지역 명칭과 거의 일치한다. 1903년 압록강대안 조선인 면과 호구의 수는 다음과 같았다.

53) 牛丸潤亮·村田懋磨, 1927, 앞의 책, 80쪽, 김득황, 1973, 앞의 글, 188-189쪽.

54) 신병보의 명칭을 한국 명칭이라고 한 것도 이상하다. 중국은 堡와 社라는 행정구역 명칭을 가지고 있었다. 1915년 조선총독부의 정탐보고서에 의하면 신병보에는 통화교회와 천주교 본부가 있었다. 조선총독부, 1971(1915), 「국경지방북명서」, 『백산학보』 11, 221쪽.

55) 현재 『변계호적안』은 제1책에 七道面, 帽山面, 湯河龍城面, 제2책에 間島面, 新別面, 九道面, 八道面, 제3책에 大東面 부분만 발견되었다.

〈표 3〉 1903년 압록강대안 조선인 면과 호구 수

현별	면별	대안지명	부근지명	호 수	남	여	계	
장백부, 임강현	신별	삼수		291	537	117	659	
	대진		(大同面)	367	941	855	1,796	
	강별		(江州面)	340	702	661	1,364	
임강현	간도	자성		354	733	681	1,414	
	용성			360	856	827	1,683	
	팔도		팔도구	315	747	725	1,472	
	모아		모아산	433	870	839	1,709	
	칠도		칠도구	336	717	645	1,361	
	천금	후창	칠도구	308	586	665	1,251	
	구도		구도구	254	531	514	1,045	
집안현	대황	강계	대황구노계	352	797	788	1,585	
	소황		洞溝	328	658	639	1,297	
	구룡		마선구	333	795	778	1,573	
	태평		대평구	377	904	869	1,773	
	신상		신개하		236	765	114	879
	신하				193	673	617	1,290
	유수	위원	유수립자	404	955	926	1,881	
통화현	복강	강계	강전자	295	587	579	1,166	
	노칭		통화성	316	746	765	1,511	
	팔도강		팔도강					
홍경현	신병보		신병보					
환인현	연산	초산		270	802	726	1,528	
	횡도			334	769	472	1,440	
	오룡			173	562	496	1,058	
	운산			363	856	809	1,665	
	양도			417	998	945	1,943	
관전현	연하	벽동		253	518	640	1,158	
	운하			363	617	568	1,185	
	구상	창성		294	880	859	1,739	
	수상	삭주		360	1,138	1,071	2,209	
	수하			411	797	715	1,512	

안동현	노두	의주군		416	732	685	1,417
계	32개 면			9,754	23,937	21,656	45,593

출전 : 현규환, 1967, 『韓國流移民史』上, 어문각, 141~142쪽.

지금까지 압록강 대안의 행정구역 설치에 영토 문제와 관련해서 논급되었다. 그러나 강북일기를 보면 행정구역의 실체에 대해서 의문이 들며 설사 행정구역을 설치했다고 해서 그것이 영토보다는 인민과 관련되고, 자주 변경지역 관리의 인민에 대한 탐학으로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조선 내지에서의 관과 민의 관계가 압록강 대안의 한인 지역까지 확장된 것으로 볼 수 있었다. 중앙 정부는 강북의 조선인들을 ‘보호’하고, 이들이 정부에 충성을 바치게 하기 위해서 ‘歸化’를 종용하였다. 그렇다면 왜 한국 정부는 강북 한인을 귀화시키려고 하였을까. 그리고 왜 지방 관리가 중앙 정부의 승인도 받지 않고 강북 한인을 관할하려고 하였을까. 중요한 원인은 조세 징수였다. 한국 정부는 강북 한인에게 지세를 거둘 수는 없었지만 ‘호세’는 거두려고 했다. 그것이 강북 한인이 한국 정부의 관할을 받는다는 표시였다. ‘귀화’는 1872년에는 귀국(刷還)을 의미하였지만 1900년이 되면 단지 한국의 호적에 수록되어 호세를 납부하는 것을 의미했다.

#### 4. 호세 혁파에 관한 협정 체결

민용호가 3일째에 강을 건너오려고 하자 각 사의 公掌들이 연명으로 청하기를, 자신들이 청인 관병과 保正[保甲制의 耆]들에게 억압받고 착취당하고, 군과 현에 호출되고 붙잡혀 가서 가산을 탕진한 사람이 많으며, 관에서 매호마다 문호세(戶錢) 수십 켤미를 춘추로 강제로 징수하고 있다고 하고, 지금은 이미 귀화하였으니 어찌 이 두 가지 고역을 치르면서 저들의 학대를 받겠습니까라고 했다. 이것은 한국 정부가 강북 한인을 관할하려고 하면 필연적으로 한국 정부와 청 정부의 이중적 관할, 곧 이중적 수탈의 문제가 발생

하게 되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다. 민용호가 이중적 관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강북 한인이 청의 관리에게 내는 門戶稅를 혁파할 수 있어야 했다.

민용호는 우선 초산군수에게 김승수가 귀순하여 강북 백성들의 의혹이 풀렸으며, 이미 16사의 공장도 정하였으니 강북이 모두 귀화하게 되었음을 알렸다. 5월 7일 明事(員)인 李東俊과 李東翼을 水上社로 보내어 백성들을 위로해 말하기를 이광하 관리사는 다시는 강북을 간섭하지 않을 터인즉, 더 의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각자 생업에 안착하라고 했다. 사원 몇 사람이 말하기를 “근년 이래로 귀화를 권하는 관리는 강을 사이에 두고 앉아서 단지 명령만 전하고 백성을 위협만 했으니, 공은 친히 마을에 다니면서 면면이 효유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백성들이 심복하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했다.

이에 민용호가 강을 건너서 황성사에 도착했다. 청인 王懋忠이 전에 團練官으로 있을 때 한인들이 그에게 한민을 관할(專管)해 줄 것을 청하였다.<sup>56)</sup> 왕무충이 한민에 대한 관할을 빌미로 해서 을미년 이후에 매호에 10여량을 토색질하였다.<sup>57)</sup> 이미 3, 4년이 지나 스스로 회인·통화·관전 3현 都統領으로서 한인을 전담 관리(韓民專管監理)한다고 선언하면서 사람들에게 민용호는 가짜 관리로서 그대들을 해치려 한다고 했다(470쪽).

다음날 청나라 관리 團練 賈穀武가 기별해서 민용호를 만났다. 가각무는 “귀국의 관리들은 비록 우리나라 사람들이라도 미워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전후에 한국 관리가 백성을 위로한다고 하면서도 오기만 하면 토색질을 하니 유랑하는 귀국 백성들은 의복과 양곡을 우리나라 사람에게 차용하지 않음이 없었으니 어찌 채무가 없겠습니까? 한번 재난만 당하면 문득 야

56) 후술하겠지만 회인현장 高喧陽이 민용호와의 담판 과정에서 民訴 한 장을 보여주었는데, 流民 李盛芝 등이 청인 왕무충으로써 한민을 관할하는 것을 원하였다. 그 원인은 한국 관리(韓官)의 실덕 때문이었다. 『關東倡義錄』, 156쪽. 한무충은 1863년에 집안에 와서 한인들의 토지를 거의 다 빼앗다시피 해가지고 團練場으로 만들었는데 그곳이 通溝로 발전했다고 한다. 일본의무성육해군성 편, 1989, 『일본의 한국침략사료총서 총편』 4, 한국출판원, 159쪽; 손춘일, 1997, 앞의 책, 343쪽.

57) 『關東倡義錄』, 153쪽.

간도주를 하여 우리나라 사람이 귀국인에게 떼인 돈이 1년에 수십만량이 됩니다. …회인·통화 양현에 곧 가서 조약을 맺으면 나도 또한 공을 도울 것입니다”라고 했다. 각각무가 양국의 공문서를 가지고 왔습니까라고 묻자, 민용호는 한국과 청이 조약을 체결한 것이 있는데(韓淸議約) 무슨 별도의 공문이 있겠는가라고 했다. 며칠간 머물면서 백성들 실정을 살펴보니 민심이 여러 갈래로 갈렸고 청나라 사람의 선동도 더욱 심하므로 사원을 나누어 파견하여 가가호호에 깨우치니 민심이 점차로 교화되었다(470~471쪽).

14일 초산성으로 가서 초산군수에게 “강북 백성들의 실정은 4파로 갈려 있는데, 수하사에서는 김승수의 원통함과 억울함을 보고 백성들이 국법을 믿지 않고 있고, 수상사에서는 왕무충이 우리 백성들을 선동하고 있고, 노인령 안에는 처음부터 우리 관리들의 침략을 받지 않으면서 몇 십 년 동안이나 성장하였기 때문에 거의 고국을 잊어버리고 있으며, 모산사 이상(모산사에서 압록강 상류방면)은 스스로 상류지방에 살고 있다면서 침해 받는 것을 보고 웃고만 있다”고 설명했다(471쪽). 곧 민용호가 파악한 바로는 모산사에서 압록강 하류방면의 수하사와 수상사, 그리고 모산사에서 압록강 상류방면, 그리고 노인령까지의 내지 방면을 구분하고, 다시 수하사와 수상사를 구분하였다. 한국 관리의 탐학 대상이 된 것은 주로 수하사였다. 그리고 수상사는 또 왕무충이라는 청인의 탐학이 심하였음을 알 수 있다.

초산군수가 조약 체결을 만류했다. “한국 관리가 강을 건너가는 것은 예로부터 그 전례가 없었다”고 했다. 민용호는 하루를 머물면서 마필과 시종자들의 의복을 한결같이 공식에 의거하여 의젓하게 갖추니 마치 대관과 같았다. 5월 17일 민용호가 연하사에 도착하자 김정섭, 김승수 및 산골의 노인들이 맞아주었다. 김정섭이 거의 도적들(賊人)에게 죽음을 당할뻔 했는데, 밤중에 총을 메고 쳐들어와서 가짜관리를 붙잡으러 왔다고 했음을 알렸다. 이는 대개 김승수가 총상을 입은 후로는 한인 관리를 가짜라고 말해왔기 때문이었다. 이윽고 백성들의 진정서가 답지하였는데 민용호는 이것들을 분사장에게 보냈다. 민용호는 강북의 집사들의 복색을 병정과 같이 하겠다는 뜻

을 이미 분사장에게 품의했다고 하고, 10명에게 군복을 입고 총을 메고 뒤따르게 하고,<sup>58)</sup> 10명은 패랭이를 씌워 주먹만한 솜뭉치를 달고 앞에서 소리를 질러 행인을 피하게 하니 청나라 사람들이 길을 피하면서 진짜 한국 판리가 왔다고 했다.

매일 80~90리를 걸어 4일만에 회인에 도착했는데 길을 가면서 보니 “평평한 넓은 들에는 모두 청인들이 살고 있었으며, 우리나라 사람들은 깊은 골짜기나 높은 산마루에서 벌집, 제비집 같은 데서 남녀가 함께 씨를 뿌리고 있었다.”<sup>59)</sup> 어떤 사람이 “청나라 사람들이 우리에게 문호세 30~40량을 징수하고 있는데 어떤 때는 1백 여 량이 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선동하여 청인들이 쳐들어와 가산을 파괴하기도 하여, 죄가 있어도 다스리지 못하고 원통함이 있어도 호소할 데도 없이 항상 청인들의 협박을 받으면서 금년에는 이 골짜기로 명년에는 저 골짜기로 무상하게 옮겨 다니면서 항구적인 생업이 없습니다.”라고 했다.<sup>60)</sup>

이후 민용호는 회인현과 통화현에서 각각 조약을 체결하였다. 이 조약 체결 과정에 대해서 『국역 복재집』은 “여러 날 교섭하여 혹은 서찰로써 변론하기도 하고 혹은 장정에 의거하기도 하면서, 수천마디의 말을 반복해 마침내 사적인 조약을 맺었다. 드디어 거류지역을 정하여 경지세 이외의 문호세나 그 밖의 잡역을 일체 면제하였다. 그리고 청인들이 횡포 침해할 수 없고

58) 이에 100여금으로 포복을 사서 군복을 모방하여 10명에게 입혔다. 『關東倡義錄』, 155쪽.

59) 이러한 한인 농가의 빈궁은 가린의 여행기에서도 확인된다. “조선인 농가 약 30호가 2필로가 좀 넘는 좁은 골짜기에 흠어져 있다. 대 여섯 정도 되는 중국인의 집이 있는데, 그들은 조선인들이 살고 있는 땅의 주인들이다. 조선인은 그들에게 수확의 반을 바친다(『가린여행기』, 90쪽).” “조선인들의 조그만 초가집에서 지내다가, 광대한 중국집의 크고 넓은 방을 대하니 매우 강력한 인상을 받지 않을 수 없었다(위의 책, 115쪽).” “조선인과 중국인들이 사는 계곡이 여전히 계속된다. 조선인들은 가난하고 중국인은 부유하다. 토지는 모두 중국인의 소유였기 때문에 조선인들은 산으로 밀려나, 바위 옆이나 관목 숲 옆에서 조그만 경작지를 개간하고 있었다. 조선인들은 열 단의 곡식 중 네 단을 중국인에게 주면서 그들의 땅을 경작하고 있었다(위의 책, 117쪽).”

60) “갑오 이래 조세가 경감되고 국세가 회복되었다 … 개척 입목하면 4년 전에는 징세를 하지 않지만 4년 후에는 청나라 사람에게 지세를 납부해야 한다. 비록 이동해야 하는 날이지만 가을을 팔 수 없고 모두 전주에게 넘긴다. …혹은 세를 정하여 거두는데 곡출 지력이 해마다 감소하지만 징세는 같이 한다.”

청 관리들이 위협할 수 없다는 뜻으로 각 지방에 포고하였다.”라고만 기술하였다(479~480쪽). 그러나 국사편찬위원회가 편찬한 『관동창의록』에서는 조약체결 과정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민용호 일행이 회인현성(通溝)에 도착하자 거리를 채운 관중이 백 수명이었는데 현에 주둔하는 邊兵이 2천 여 명이라고 하였다. 민용호는 자신이 흠차강북유민상무도공사원 겸 전권대판관리사라고 하였다. 회인현 장관 高暄陽은 부임한 지 10여 일밖에 되지 않았다. 오후 2시에 민용호를 만나자고 하여 민용호가 20여 명 종복을 거느리고 방문을 했다. 正堂에는 병대 100여 명이 늘어서 있었다. 민용호는 각 국이 자국의 백성을 호적에 수록하는 권리가 국제공법이라고 하고, 자신이 조정의 명령을 받아서 귀계에 있는 유민을 무휼하려고 한다고 했다. 이에 고훤양이 거구순검아문이 이미 보고를 해서 귀 유민이 민요를 일으켜서 사망자가 7명에 달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했다. 민용호는 사망자는 없고 다친 자가 7명이라고 했다.

민용호가 다음의 2건을 제시했다. 첫째, 양국交界의 백성을 위로하는 일이다. 詞訟 및 犯律의 백성은 제5조와 제7조에 따라서 처리한다. 양국민 간의 살인이 아닌 많은 민사사건은 상호 인원을 파견하여 聽審하고, 본국의 법률을 어긴 자에 대해서는 貴大人이 나에게 알려주면 내가 각 社 公掌을 지휘하여 처리하고, 내가 귀대인에게 알려주면 귀대인이 團練公局 및 保正을 지휘해서 처리한다.

둘째, 한청조약 제12조에 의해서 邊民이 이미 정착하여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越墾者)은 그 생업을 안정시키고 성명과 재산을 보호한다. 한인 유민이 이미 농업에 종사하는 자는 지세는 납부할 수 있지만 그 외에 戶에 따라 징수하는 門戶錢은 영원히 폐지한다.

고훤양이 보정에게 명령하여 門戶 各色을 일체 금지하게 했다. 일찍이 청에 거주한 사람은 중국 민인과 동일하게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고훤양은 <보갑단련장정>은 정부가 규정에 따라서 시행(飭辦)한 것이지 보정이 사사로이 협박한 것이 아니라고 했다. 이에 민용호가 보정배가 농간을 부리는

것이라고 하고 團練費 부족으로 우리 백성을 侵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리고 청 상민이 한국에 왕래하고 한성 및 항구와 내지에 점포를 설치하고 거주하는 자가 수천 호에 이르는 데 호세를 징수하지 않는다고 했다.

고훤양이 압록강(원문은 鴨江)조약 3건 일을 정하면서 다음을 제시했다. 첫째, 청의 민인이 압록강 상류에 나가서 벌목하는 자는 벌목을 떠내려 보 내다가 홍수를 만나면 한국 강안에 도착해서 건너가면 분쟁이 생기고 또한 한국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임을 지적했다. 둘째, 한국 민인이 강을 건너서 목식을 하는 것은 반드시 여권(護照)을 지참해야 한다. 셋째, 한국 민인이 목식을 하는 경우 목식의 수에 따라서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민용호가 김정섭에게 말하기를 “제2건인 여권의 일은 받아들일 수 없다. 회인계는 강계대안에서 우리 계와 강을 연하는 데 차목이 없고 초산·벽동의 민이 이쪽(此界) 파지강 등지에 들어가서 벌목을 한다. 만일 여권을 정하면 반드시 이를 벌미로 우리 백성을 토색할 것이다. 자성과 후창 이상은 청인이 우리 쪽(我界)에서 벌목을 하는 일이 많다. (파지강이 있는) 통화현에 가면서 여권을 청구할 수 없다. 어찌 하류계 우리 백성의 생을 폐할 수 있겠는가?”

다음날 고훤양이 문호전에 대해서 돌아가서 상세하게 알아보겠다고 하고, 團練保護公費 외에 특별히 부과하는 세금은 없고, 세금은 땅에 따라 징수하지 호에 따라 징수하지 않는다고 했다. 민용호는 다시 여권의 일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귀 백성이 우리 영토-백두산 남쪽-에서 벌목을 하는 자가 만명이 넘고, 우리 백성이 귀 영토에서 벌목하는 자는 수천명에 불과하다. 연전에 조정에서 입산세를 거론했는데 만일 여권 사단을 일으키면 조정이 이를 밍자하여 입산세를 행하면 귀국 목식의 가격 상승이 지금의 10배에 이를 것이다.<sup>61)</sup>

61) 『關東倡義錄』, 160~161쪽.

고훤양이 다음날 交界入社條約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혔다. 우리가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반드시 ‘서수봉 공사(원문은 徐欽使)’가 한국 외부와 협상해야 한다. 그 전에 압록강변의 일은 피차가 스스로 처리할 뿐이라고 했다. 결국 현지 중국 관리는 강북 상무사를 설치하는 데 대해서는 그것을 협상의 안건으로 접수하지 않음으로써 결국 인정하지 않았다고 할 것이다.

다음날 고희양이 交界入社條約에 이르러서는 우리(我輩)가 함부로 처리할 수 없고, 서수봉 공사(원문은 徐欽使)가 귀 외부와 협상해야 실시할 수 있는데, 그때까지는 압록강면의 일은 피차 스스로 헤아려 잘 생각할 뿐이라고 하여 사실상 상무사 설치에 대해서 인정해 주지 않았다. 다음날 아침 고희양이 潘府(奉天)에서의 전보를 보여주었다. 그 내용은 “한민에게 토색을 가할 필요가 없다. 관대한 뜻을 보이라”라는 것이었다. 이에 문호전은 영구히 폐지한다고 했다.<sup>62)</sup>

민용호 일행이 파지강 상 玉女峯을 지나 興頭村에 들어가서 金枝秀를 불러 公掌에 차출했다. 김지수가 말하기를 몇 사람이 금년 봄에 柳毅菴(류인석)에게 가서 約長[鄉約의 摺帖]을 받았다고 하고 가까운 동리에서 향약에 들어가려는 사람들이 어떻게 상무에 참가하겠는가라고 했다. 민용호가 이것은 공과 사의 차이인데 양자를 병행하는 것이 좋다고 했다. 드디어 (김지수가) 公掌을 맡게 되어 사람들을 불러서 설득하고, 사의 명칭을 新興社로 정했다.

五道嶺에 도착하여 호송해 주던 관병 2명을 돌려보내고 고개를 넘자 통화계였다. 杞檀의 아름다운 목재와 蓼을 심은 농장(圃)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다. 정말 流民의 福地였다. 劉麟錫이 거주하는 訪花村을 방문했다. 류인석과의 만남 이야기는 후술할 것이다. 다음날 비를 맞으며 新下界에 도착했다. 한인들은 이미 薙髮하고 있었다. 卯乙溝에 도착하여 沈正河를 찾았으나 집에 없었다. 파지강을 건너면서 민용호가 김정섭에게 “추측하기 어려운 것이 사람의 일이다. 어찌 다시 이 강을 건너리라고 생각했는가”라고 했다.<sup>63)</sup>

통화현에 들어가서 성 밖에 있으면서 명첩 및 서찰을 보냈다. 6월 초3일 통화현 장관 陳璋을 만났다. 민용호는 작년 11월(獵月)에 평북 전성 상무를 관할하라는 명령(命)을 받고 이어서 귀 영토에 있는 유민을 무휼하라는 勅令(勅)을 받았음을 말하고, 22일에 회인현에 들어가서 4일을 지냈다고 했다.

62) 위의 책, 161~162쪽.

63) 위의 책, 164쪽. 1896년에도 민용호가 김정섭과 함께 파지강을 건너던 적이 있었다. 그 당시의 상황은 「西行日記」에 기록되어 있다.

민용호는 흠차평안북도상무도공사원 겸 강북유민전권대판관리사사무라고 소개하고, “한청조약 제12조에 따라 우리나라 내부가 김승수를 파견했는데 어떻게 사로잡으라고 명령하였는가”라고 하고, “제5조 제1항은 중국 민인이 한국에 있는 자는 범법의 일이 있으면 중국영사관이 법에 따라 심판하고…”라고 하자, 진장은 “그 규정은 피차 도성 및 통상항구의 약이다. 민사소송의 경우에는 피고 소속국 관원이 본국 법률에 따라서 하고, 원고 소속국 관원이 聽審하여 承審官이 예로서 상대한다”라고 했다.<sup>64)</sup> 호세에 관해서는 懷仁私約正本을 보여주자 진장이 그대로 하겠다고 했다.

從人 朴陽滄이 3일의 비용 중 은 40량이 부족하다고 했다. 김정섭의 제안으로 통화현에 있는 강계의 소장수(牛商)에게 소 3마리를 빌리기로 했다. 유기종이 죄를 지은 것을 두려워하여 청의 관청으로 도망갔는데 집사로 하여금 잡아오게 하여 杖 10대를 치고 풀어주었다. 진장이 관병 2명이 호송하게 했다. 파지강을 건너서 50리에 이르러 돌려보냈다. 심정하가 『中國月報』를 보여 주었는데 이 신문 기사에는 조선 匪徒 이광하와 김승수가 유민을 탐학하였다고 썼다.<sup>65)</sup>

6월 11일 북으로 노인령을 다시 넘어 왔다. 비를 맞아서 피곤함을 털어낼 수 없었지만 종자들은 기뻐하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482쪽). 이동준으로 하여금 西大嶺 등지에 가서 백성을 회유하게 하고, 김정섭에게 신상사에 가서 사를 설치하고 백성을 회유하게 했다. 오직 왕무충이 우리 백성을 관할하면서 4~5년간 학정을 일삼았는데 전관한민감리첩 또는 풍헌준위첩을 발행했다. 민용호 등이 공범으로써 재판의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서 비밀스럽게 첩을 받아들였다.<sup>66)</sup>

6월 13일 황성사에 도착하니 둘째 아우 柱鎬가 황제의 조칙을 전했다. 주호가 말하기를 “분사장이 전보로 강북 백성들의 소요 및 그 해산의 경우를

64) 위의 책, 166~167쪽. 한국에서 청인을 재판할 때 ‘聽審’의 사례로는 구별진, 2006, 『한청 통상조약 일부 조문 해석을 둘러싼 한-청의 외교 분쟁』 『대구사학』 83을 참조하라.

65) 위의 책, 170쪽.

66) 위의 책, 171쪽.

아되니 황제께서 즉시 내부대신 이견하를 불러서 민용호를 칭찬하고 곧 어필로써 禧陵 參奉이라 쓰시어 친히 계자를 첨가해서 하사하셨다”고 하고 또 농상공부대신 민병석을 불러 민용호에게 내리는 조칙을 받들게 하시고, 또 동 대신으로 하여금 강북 백성들을 효유하는 조칙을 받들게 하였다고 했다(483쪽).

농상공부대신이 받던 조칙을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지금 너희들에게 강북이 바로 제2의 고향처럼 되어 하루아침에 귀국하는 것은 형세로 보아 갑자기는 어렵겠지마는 몸은 원래 한국 민족이니 사농공상이 한결 같이 한국의 법규에 따르고 모름지기 도공사원 민용호와 더불어 재물을 불리고 생업에 안주하는 계책을 힘써 구하여 우리 황제께서 멀리 있는 사람과 가까이 있는 사람과 같이 보고 백성을 친자식처럼 보는 정을 깊이 이해하라.” 민용호가 이 조칙을 각 사의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또 한통을 깨끗하게 베껴서 회인·통화·관전의 3개 현의 관리들에게 선전하였다(485쪽).

같은 날 高山鎭에 도착하니 백성들의 호소문이 답지하여 산과 같이 쌓였다. 대체로 강북은 오래 동안 무법천지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소송사건은 십중팔구는 강도가 아니면 살인사건이었다. 이에 규칙을 정하여 장정을 첨부하여 각 사 공장에게 선포하기를, 작년(1899) 정월 이후의 사건은 다만 대차에 관한 소송(원문은 債訟)만 접수하고 금년 정월 이전의 일은 육범이라도 소송을 접수하지 말라고 했다. 이에 범법자들이 곧 안정되었다. 이는 중한 범죄가 도리어 가볍게 처리되는 것 같지마는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서 그 정당성을 설명했다. “국가의 교화가 미치지 못하는 곳에서 아침에 모였다가 저녁에 흩어지는 상황인데, 모질고 악한 풍습을 오래된 것과 최근의 일에 관계없이 모두 소급해서 조사한다면 그들이 어찌 심복하겠는가?”

## 5. 의화단의 난 이후

『국역 복재집』에는 등장하지 않지만 『관동창의록』에 나오는 또 하나의 사건이 있다. 그것은 ‘王克好의 난’이다. 왕년에 초산군수가 김승수를 체포하려고 통화현에 조회를 하여 통화현 관병이 김승수와 김승수가 세를 들어 사는 청인 劉樹藩을 체포하려고 했다. 咸聚保의 約正 왕극호가 이 기회를 이용해서, 한인 金允程·金君碩·崔珍弼·李允三 등 난류배에게 너희 4동민이 모두 청에 내부하면 호에 따라 대두 2두만 납부하면 된다고 하고 유수번과 김승수가 官許地를 설치하려고 한다는 말을 퍼트려서 통화현 관리가 김승수와 유수번을 체포하게 했다. 김승수는 사람들의 보호로 체포를 모면했지만 유수번은 체포되었다. 관병이 유수번에게 은 2錠을 토색질하였다. 지난 15일 밤 3경에 청인 사오십명과 한인 삼사십명이 김승수가 있는 한인 李鳳己 가를 포위하고 가옥과 가구를 파괴했다. 왕극호가 4동민에게 현성에 들어가서 한풍헌을 구하기 위해서 은 100량을 바쳐라고 하고, 김승수와 통사, 서기, 집사 오륙명을 잡아갔다. 이 사실을 신하사와 신상사 양사 공장이 급하게 보고해 왔다.<sup>67)</sup>

민용호가 크게 놀라서 執事(官兵) 1명을 보내서 회유하였으나 그가 또한 맞고 돌아왔다. 이에 통화현 지방관에게 조회했다. 우리나라 내부 파견원 김승수가 잠시 귀국인 유수번가에 거주하는데 귀 함취보 약정 왕극호가 大陽里 유민을 선동하여 한국 관헌을 축출하고 스스로 관할하여 호마다 대두 2두를 거두어 착복하려고 한다. 왕극호가 대양리의 한인 유민 김윤정 등 3~4명과 通詞 韓志玉 부자(韓風憲), 서기 奉昌祚 및 이봉기 집사 2명을 포박하여 갔다.<sup>68)</sup> 청인이 한인 裴允永의 처를 납치해 갔는데, 함취보의 일이었다. 배운영이 왕극호에게 가서 고하였지만, 배운영은 큰 기둥에 거꾸로 매달려 밤을 새운 후에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 이러한 일련이 사태를 (장무

67) 위의 책, 173, 177쪽.

68) 위의 책, 174쪽.

원) 李中英이 ‘왕극호의 난’이라고 표현했다.

통화현성은 1895년 김구가 방문했을 때 성내에 인구가 모두 5백호라는 데, 조선인은 한 가구만 거주하고 있었다. 그는 곧 ‘통사’였다.<sup>69)</sup> 김구는 한인 통사를 ‘胡通事(오랑캐 통역관)’라고 하면서 부정적으로 기술했다.<sup>70)</sup> 그러나 왕극호의 난에서 한인 ‘통사(한풍헌)’ 한인의 편에서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김구가 강북으로 간 여정은 민용호의 첫 번째 강북행 - 『서정일기』에 나타나는 - 과 일치한다. 김구는 강북행 기간에 ‘의병’에 참가했다. 강북인은 “대개는 청일전쟁(원문은 일청전쟁)에 피난 간 이들이지만 간혹 본국서 죄를 짓고 도망해 온 사람도 있었다. 그 중에는 민요에 장두가 되었던 호걸도 있고, 공금을 흠포한 관속도 있었다.” ‘호걸’ 중의 한 사람이 벽동 사람인金利彦이었다.<sup>71)</sup> 그의 동지로는 초산에서 이방을 지낸 김규현이 있었다. 김이언은 倡義의 수령이 되어서 초산, 강계, 위원, 벽동 등지의 포수와 강 건너 중국 땅에 사는 동포 중에 사냥총이 있는 사람을 모집하여서 한 300명 군사를 두고 있었다.

김구는 초산·위원 등지에 숨어 다니며 포수를 모으는 일과 강계 성중에 들어가서 화약을 사오는 일을 맡았다. 거사일은 올미던 동짓달 초생 압록강이 얼어붙을 때로 하였다. 군사를 얼음 위로 몰아서 강계성을 점령하지는

69) “남자는 변발을 하여서 중국 사람의 모양을 하고 현청의 통사로 있다가, 그의 처자들은 우리 옷을 입고 있었다. 거기서 10리쯤 가서 심생원이라는 동포가 산다고 하기로 일부러 찾아갔더니, 정신없이 아편만 먹는 사람이었다.” 김구, 도진순 주해, 1997, 『백범일지』, 돌베개, 74쪽.

70) “만주로 돌아다니는 중에 가장 미운 것은 호통사였다. 몇 마디 한어를 배워가지고는 불쌍한 동포의 등을 긁고 피를 빨아먹는 것이었다. 우리 동포들은 감았던 난리를 피하여 생소한 이 땅에 건너와서 중국 사람이 살 수가 없어서 내버린 험한 산골을 택하여 화전을 일구어서 조나 강냉이를 지어 근근히 연명하고 있었다. 호통사라는 놈들은 중국 사람들에게 붙어서 무리한 평계를 만들어 가지고 혹은 동포의 전곡을 빼앗고, 혹은 부녀의 정조를 유린하는 것이었다. 한 곳을 가노라니 어떤 중국인의 집에 한복을 입은 한 처녀가 있기에 이웃 사람에게 물어본즉, 그 역시 호통사의 농간으로 그 부모의 빚 값으로 중국인의 집에 끌려온 것이라고 하였다. 관전, 임강, 환인 어디를 가도 호통사의 폐해는 마찬가지였다.”

71) 김이언이 호걸이라는 점은 다음의 기술에서 알 수 있다. “용력이 월등히 뛰어나서 나이 50여 세에 심양에 있는 500근 짜리 화포를 가만히 앉은 자리에서 양손으로 들어 올렸다 내렸다고 한다.”

것이였다. 책원지는 삼도구였다. 강계성 공격은 먼저 고산진을 쳐서 무기를 빼앗아서 군사에게 나누어 주었다. 이튿날 군사는 강계로 진군하여 야반에 독로강 빙판으로 전군을 몰아 선두가 인풍루에서 10리쯤 되는 곳에 다다랐을 때, 강 남쪽 송림 속에서 화승불이 번쩍번쩍하는 것이 보였다. 그 송림 속으로부터 강계대 장교 몇이 마주 나와(이들은 이미 내용할 약속이 되어 있었음) 김이언을 찾아보고 첫말로 묻는 말이 이번에 오는 군사 중에 청병이 있느냐는 것이였다. 김이언은 이번에는 청병은 오지 않았지만 우리가 강계를 점령하였다고 기별하는 대로 오기로 하였다고 말하였다. 그 장교들은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면서 돌아갔다.

그들이 돌아가자마자 술 숲에서 포성이 울려나오더니, 탄환이 비처럼 쏟아지기 시작했다. 좌우의 산골짜기 험준한 빙판 위에서 근 천여명의 사람과 말떼가 큰 혼잡을 빚으며 물밀듯이 밀려 나가고 들어오니, 어느새 총알에 맞아 죽는 자, 다쳐서 아우성을 치는 자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김구가 산 언저리로 올라가서 강계성과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는 촌락으로 들어갔다. 한 동네 전부가 피난하고 집집마다 사람을 찾아볼 수 없었다.

김구가 집 바깥문이나 안문이나 다 열어둔 채로 한 사람도 없는 빈집의 안방에 들어가니 화덕 불이 피어 일렁일렁하고 있었다. 방안 가득히 기름 냄새와 술 냄새가 났다. 시렁 위에서 광주리를 꺼내보니 온갖 고기가 가득하였다. 알고 보니 집주인이 어머니 대상을 지내다가 갑자기 동구에서 포성이 진동하자 조객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식구들은 산 속으로 피신한 것이였다. 잠시 들른 주인이 말하기를 “강 건너 쪽에서 의병이 밀려와 강계를 치러다가 군대에게 물려간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멀리서 자꾸 포성이 들리니 알 수가 있습니까? 승부가 어찌 될지는 아무도 모르지요” 김구가 “의병이 오나 군대가 오나 촌사람들에게야 무슨 관계가 있겠소? 부녀자와 어린 아이들이 눈 속에서 밤을 지내다가 무슨 위험이 있을지 모르니 속히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라고 했지만, 주인은 “내 집 식구뿐 아니라 온 마을이 거의 다 산위에서 밤을 보낼 준비를 하였다”고 하였다고 했다.<sup>72)</sup>

이 짧은 에피소드는 백범의 생애에서 잘 알려진 사실은 아니다. 김구가 참가했던 '김이언 의병'은 의병과 민란의 경계 위에서 있었다. 김이언 의병도 강북일기에 나오는 김승수의 난이나 왕극호의 난과 마찬가지로, 강북의 조선인과 강계와 같은 변경 지역의 조선인이 모두 국가와 변경의 경계 위에서 있었음을 말해 준다.

다시 강북일기의 기술을 따라가 보자. 청인이 강계 연강 등지에서 흘러내려오는 서까래용 목재(桴木) 30여 척을 약탈하고 한인에게 충상을 입혔다. 강계군수와 회인현장이 검시를 하는 차에 강머리에서 만난다고 했다. 이것은 지방의 소관이지 민용호의 소관은 아니었지만, 다시 계약을 맺기 위해 가는 도중에 회인현장을 보려고 했지만 그가 오지 않아서, 刹溝衙門[왕극호의 거주지] 王濬敍를 한번 보고 돌아왔다.

7월 28일 통화현 장관에게 통고하기를 왕무충이 봉황성에서 발한 공문 내에 전항3현도통관 겸 조선인관 운운 하면서 만일 한국 관리(원문은 韓官)로 오는 자가 있으면 결박해서 團練局으로 끌고 갈 것이라고 운운하고 유민에게 軍需錢을 호에 따라 10량을 징수한다고 했다.<sup>73)</sup> 29일에 통화현장이 조회하기를 왕극호가 이미 찰구아문에 조사를 받고 있다라고 했다.<sup>74)</sup>

이를 보면 왕무충이 團練의 團長이었음을 알 수 있다. 단련은 保甲과 함께 발전한 제도이다.<sup>75)</sup> 보갑이 자치적인 행정조직이라고 하면 단련은 자치적인 자위(군사)조직이었다. 왕무충의 사례는 변경에서의 단련의 역할의 일단을 보여 준다. 왕무충이 한인을 관할하였다는 것이 한인도 단련에 소속되

72) 위의 책, 76~77, 80~85쪽.

73) 민용호는 安鳳初의 보고를 보니 자신이 관할하는 社의 공무가 전혀 두서(緒)가 없는 것은 玉石洞民인데, 이를 전에 薛際亨이 편지를 하기를 王官 懋忠이 봉황성에서 공문을 보내기를, 三縣都統管겸 朝鮮人官 운운하면서 만일 한국 관리라고 오는 사람이 있으면 그 자리에서 결박해서 단련국으로 끌고 오라고 했다고 하였다. 민용호는 王·薛 두 사람이 표리를 이루어 煽惑하고 또 우리 백성(敝民)인 申鳳仁·金永純이 이들과 호응(同聲相和)한다고 하고, 병졸을 보내서(派差) 잡아오려고 하는데 왕·설 두 사람이 난동을 일으킬 것이 뻔하므로, 議約 제5조 제4항에 따라(陳璋이) 公安局(公局) 병사 보내서 申·金 두 놈(兩漢)을 우리 관청으로 압송해 주시는 것이 어떠한가라고 말했다. 위의 책, 178~179쪽.

74) 위의 책, 179쪽.

75) 전형권, 1985, 「團練과 湘軍의 성격에 관한 고찰」 『경남사학』 2.

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면, 강북에서는 한인이 주도하는 ‘상무사’와 ‘향약’과 같은 자치적인 조직뿐만 아니라 청인이 주도하는 ‘단련(團長)’- 그리고 왕국호의 사례에서는 ‘鄉約(約正)’-과 같은 자치적인 조직도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의화단의 난 이후 평양진위대 아래에 있는 안주지방대와 해주지방대를 압록강 연안 9군에 옮겨 주둔시켰다. 그런데 지방대의 복장이 모두 외국 제도를 모방한 것이 오래되어 산골 깊숙이 살던 한인과 청인이 그러한 복색을 보지 못한 나머지 일본과 서양 군대(日洋兵)가 동쪽에서 온 것이라고 오인을 했다. 이에 의화단과 청의 군대로 흥부(興府, 곧 興京府)와 심양 등지에 주둔하던 군사가 일본과 서양 군대를 방어한다고 하며 연변에 운집(雲屯)하여 대안 양계가 하루아침에 오랑캐가 넘쳐나서 민심이 크게 소란스러웠다. 연강 우리 백성들이 짐을 지고 피난을 하는 자가 하루에 천명을 헤아렸다.<sup>76)</sup>

민용호는 지리한 장마 기간에 수십명과 伐登嶺에 있었다. 밤에는 수삼명이 순경을 돌게 했다. 皇城社 등지를 바라보니 오색 깃발(五色旌旗)이 광야에 팍 차있었다. 강계부에 들어가니 연로에 곡성이 진동하고 부가 텅 비어 있었다. 민용호는 군수 李昌濂에게 급히 포수(民砲)를 모집하여 소리를 치면서 공격을 준비하게 하면(聲音迎擊) 저들이 연변 산천의 險要를 이용해서 방비를 하고 있다고 두려워하여 감히 강을 건너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군수가 말하기를 연전에 청국 마적이 연변 郡을 침범하려고 해서 포수를 모집해서 방비를 하여, 그 화를 모면한 후에 경비를 軍部에 청구하자 부가 공문을 내려(部訓) 말하기를 이제 신식 도적은 내침을 하지 않고 또 비용이 들었다는 증거가 없어서 지출하지 못한다고 하여 결국 자신이 그 비용을 물었다고 했다. 민용호가 지방대의 崔參尉와 상의하자 그 역시 어찌할 바를 몰랐다.

강북 민인들이 날마다 강안을 넘어와서 민용호에게 군사를 일으켜서 적을 준비함으로써 창생을 구할 것을 강요(逼)했다. 민용호는 지금 각국 조약에는 먼저 군사를 움직인 쪽이 배상을 물어야 하므로 우리 수개 郡을 침입

76) 위의 책, 180쪽.

하는 것을 본 후에 내가 군사를 일으켜(발모출려) 변민을 구제하겠다고 하고, 왕년에 의병을 일으켰다고 해서(學義) 개화당이 항상 나를 해칠 마음을 품고 있는데 어찌하겠는가라고 했다. 최참위가 평양진위대에 이르기를 민용호가 강북 관할권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강북 각 사公掌 및 뜻이 있는 선비들이 밤에 배를 타고 몰래 건너와서 강북의 정형을 갖추어 보고하는 것이 마치 눈조각이 분분한 것과 같다고 했다.<sup>77)</sup>

민용호는 사람을 시켜 寧府로 보내 다음과 같이 京社에 전보를 쳤다. “의화단이 강을 건너겠다고 말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방대로는 부족하므로 상무사가 우선 포병을 모집하여 방어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민용호는 강계에서 위원으로 가서, 군수 徐永九에게 신문지를 달라고 해서 열람한 후에 자신이 이 신문을 가지고 강을 건너가서 강변에 배치되어 있는 경비(변정)들에게 일본과 서양 군대라는 의혹을 풀어주어야겠다고 했다.

다음 날 종인 한 명(一隸)과 강을 건너 段西田 統領의 군영으로 가서 연변의 경비를 철수시켜 민심을 안정시키라고 말했다. 밤중에 잠을 못 이루고 생각하기를 강북은 집집마다 사냥꾼(獵士)이 있어서 강우의 연변 포수(砲丁)는 최고의 精兵이고 지세는 천 여리를 둘러싼 구덩이(壘)인 까닭에 옛 요·금·발해·숙신이 모두 발흥한 땅이었는데, 자신이 민심을 수습하는 것은 도리어 불행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곧 자신이 처할 수 있는 상황을 임진왜란 당시 이순신이 공을 세우고서도 참언을 당한 것에 비유한 것이다. 민용호는 자시가 경사에 친 전보에 대해서 答電(回電)이 없는 상황에서 빨리 가서 임금을 뵈고 명을 받아야겠다고 생각하고, 金元燮·沈尙一·李東俊 등에게 社務를 맡기고 강북 민심을 살펴보게 했다.<sup>78)</sup>

7월 26일 비를 두려워하지 않고 길을 나서면서 강북에 사를 설치하고 구역을 나눈 지도, 귀화자를 호적에 수록한 총호구표, 회인·통화 양현 私約의 각관 정본 및 이광하가 민란 시 관리사를 위임한 증거, 평북정륜편 등을

77) 위의 책, 180~181쪽.

78) 위의 책, 182~183쪽.

들고 갔다.<sup>79)</sup> 8월 1일 민용호가 寧(邊)府에 도착했다. 영변에는 조민희 관찰사가 서울로 간지 며칠이 되었다고 하고 사람들이 송덕비를 세우려고 했다. 민용호는 봄에 府와 社가 일을 도모하던 것을 회상하자 일장춘몽 같고 격세지감이 들었다. 강원병에게 영변부에 남아서 각 군 사무를 살피게 하고, 민영하와 김원섭에게 편지를 써서 강북 각 사 공장에게 자신이 조정에 보고를 위해 잠시 경사로 가는데 함부로 일을 처리하지 말고 자신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라고 했다.

8월 16일에 서울에 도착하여 碧洞 농상대신 민병석을 만났다. 민병석이 지난 5월 어떤 사람이 모함하기를 류인석이 의화단(원문은 淸匪)에 내부하여 바야흐로 내침하려고 한다는 말을 했다고 하였다. 이에 (상무사) 사장 심상훈이 전보를 가지고 들어와서 고했다. 황제께서 크게 노하여 경무관 문봉오로 하여금 류인석과 민용호를 잡아서 처분하라고 했다. 법무협관 이근호가 힘써 (사실이 아님을) 고했다.<sup>80)</sup>

류인석과 민용호가 다시 연루된다. 민용호는 류인석의 강북에서의 활동을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앞서 이학균을 통해 올린 글에서 강북 한인을 회유할 수 있는 근거로서 류인석의 활동을 들었다. “저 류인석의 무리는 일개 布衣로서 강북에 거주한 지가 4, 5년간에 문풍이 활발하게 일어나서 강북의 백성이 자못 의리의 구별(別)과 화이의 구분(辨)을 아는데 향차 정부(朝家)가 권장할 계책(道)이 무엇이겠습니까?”<sup>81)</sup>

민용호는 일찍이 강북으로 가는 길에 강계에 도착하였을 때, 제천의진 류인석 부하로 류인석을 따라 강계까지 왔다가 살해된 權(夔洙)와 李(範稷) 두

79) 위의 책, 183쪽. 충호구표는 2년 후에 작성된 『변계호적안』과 비교할 수 있는 자료이지만 현재 발견되지 않았다.

80) 심상훈, 민병석, 이근호는 상무사와 1899년 1월에 설립된 대한천일은행과 관련이 된다. 사장 심상훈(탁지부대신)은 34명 발기인 가운데 첫 번째 인물이었다, 농상공부대신이 겸임하는 旬管社長(농상공부대신이 겸임) 민병석은 초대은행장, 부사장(1899.3.128) 이근호(법무협관)는 각각 초대은행장(1899.1~1902.2)과 2대 부은행장(1899.4~1902.3)을 역임했다. 이승렬, 2004, 「한말 은행가 집단의 형성과 광무정권」, 『동방학지』 124.

81) 『관동창의록』, 127쪽.

從事 및 사졸 19명의 무덤 앞에서 깊은 애도를 표했다.<sup>82)</sup> 앞서 본 대로 민용호는 회인에서 통화로 가는 길에 訪花村을 경유하게 되어 류인석을 방문하였다. 류인석은 5~6명의 문도와 함께 深衣大帶를 벗지 않고 성현의 서적에 침잠해 있었다.<sup>83)</sup> “(鎭東將) 李彌禧가 산동(원문은 魯國)에 가서 공씨 가문을 방문하여 공자의 초상화를 받들고 돌아와서 성전을 이곳에 지으려고 했다. …우리들이 집 뒤 觀龍山 아래에 사당을 건축하여 성전과 좌우 곁채는 이미 준공이 되었고, 華西(이항로), 重菴(김평묵), 省齋(유중교), 誠菴(박문일)을 배향하였다”고 했다(481쪽).

그러나 민용호의 ‘상무사’와 류인석의 ‘향약’이 충돌할 수 있었다. 강북일기에서 기술된 내용을 쫓아가 보자. 류인석이 민용호에게 “지금 향약을 시행하여 金枝秀를 이미 약장으로 임명하였는데 공은 어찌서 공사원으로 임명하였습니까?”라고 따졌다. 이는 5월 24일경 파지강변의 흥두촌에 가서 김지수를 소환하여 공장에 차출한 일을 말하였다. 이에 민용호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상무사는 공공의 일이고, (향약은 사사로운 일인데) 공사를 병행하는 것이 더욱 좋다고 하고 공장의 직을 맡겼습니다. 나의 소행은 공이고 공의 소행은 사입니다. 공사병행이 더욱 좋습니다. 공이 만약 수궁하지 않으면 향약 시행에 불리할까 두렵습니다(도리어 조령을 방해하는 것이 아닙니까?).”

류인석이 문하생인 玉山(李正奎)에게 “지금 조정의 명령이 지극히 엄중하니 이렇게 하지 않는다면 사이가 나빠질 것”이라고 하여 민용호의 상무사 활동을 인정했다. 玉山이 “향약소에서 호세를 받아 상납하는 것이 어떻습니까?”라고 하자 민용호가 “역시 불가합니다. 조정의 명령이 없이 호세를 거둔다면 참소하는 말이 이로부터 일어날까 두렵습니다”라고 하였다.<sup>84)</sup> 류인석

82) 위의 책, 138~139쪽. 사실은 이범직이 선발대로 申芝秀와 함께 강을 건너갔다가 그곳 수장 王茂林(王懋忠?)의 꾀박을 받아 참모관 권기수와 함께 초산으로 돌아왔다가 국경지대를 순찰하던 趙承顯 부대에 체포되어 권기수와 함께 살해당한 것이었다. 박민영, 2002, 『류인석의 국회 항일투쟁 노정(1896~1915)』, 『의암학연구』 1, 10쪽.

83) 『가린여행기』에는 류인석과는 전혀 다른 조선인의 등장을 보여준다. “일본 사람처럼 조선인도 생활방식을 고쳐야 한다구요. 즉 옛날 옷을 벗어던지고, 머리를 깎고, 옛날의 믿음 없애야 한다는 겁니다.” 많은 조선인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

의 거처에는 내지 각 군에서 배우러 온 자가 10여 명이 있었다(481~482쪽).<sup>85)</sup>

윤8월 초1일에 공상국장 吉永洙가 황제에게 민용호가 돌아온 것을 고했다.<sup>86)</sup> 東宮侍側이 먼저 유모(류인석)의 黨이 몇 명인가라고 물었다. 황태자가 황제에게 지금 민용호가 전한 말을 들으니 문도가 5~6명에 불과하고 도리어 의화단 난(團搖)에 의해서 강을 건너왔다고 했다. 5일이 지나 길영수가 입시하였을 때 민용호가 민란이 일어났을 때 서리 관리사의 이유로 청관과 담판하여 조약을 체결한 전말을 보고했다. 권도로 군복을 모방하고 인장을 주조하여(木章이 아니라 江北商務社印이라고 쓴 銅印) 문호전을 폐지시킨 일을 고했다.

고종이 통사를 다스려 죄수를 석방한 일이 신기하다고 하고,<sup>87)</sup> 지도 및 전후 문적을 일일이 열람한 후 황태자에게 정륜일편은 더욱 가상할 만하다고 했다. 그리고 길영수에게 초산군수관리강북을 제수하는 것이 어떤가라고 했다. 한 달 남짓 후에 군부협판 이한영에게 민용호의 일을 이야기하자 이한영이 “임기응변하여 가히 변방을 방어하는 재목이 될 만합니다”라고 하였다. 황제가 민용호를 의주군수로 임명하기로 하고 먼저 중추원의관에 임명하는 것이 어떤가라고 한 데 대해서, 이한영이 “(강북 한인을 귀화시킨 일은) 조정에서 40년 동안 없었던 일입니다. 지금 처음으로 강북이 나라에 순종하고 있는데 다시 다른 사람을 임명한다면 민심이 복종하지 않을까 두렵습니다”라고 대답했다(489쪽).

이 때 宋敬仁이 (공상)국장에게 부탁하여 玄尙健이 삼남을 시찰하여 동학 잔존 세력(餘黨)을 체포하는데 민심이 심히 비등하고 貪賂가 심하다고 고하

84) 李正奎, 1974, 『西行日記』 『恒齋集』과 비교가 필요하다. 李肇承, 1993, 『西行日記』 『湖西義兵史蹟』, 수서원.(이구영 편역, 1994, 제천시문화원)도 마찬가지이다.

85) 『關東倡義錄』, 163쪽.

86) 『국역 고종순종실록』에 의하면 1899년 3월 7일에 정3품 길영수를 농상공부 상공국장에 임명하였다.

87) 민용호는 고원양과의 담판을 끝내면서 갇혀 있던 한인 4명을 석방시키고 그가 감옥에 있을 때의 비용 일체를 보상해 주었다(480쪽). 그러나 이 과정에서 통사가 어떠한 역할을 하였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

게 했다.<sup>88)</sup> 고종이 이에 송경인을 서북시찰 겸 강북시찰에 제수하였다.<sup>89)</sup> 또한 역서 3천질을 제작하여 길영수에게 전하면서 민용호에게 頒曆使를 제수하여 강북에 가서 반포하게 했다. 고종이 길영수에게 명해 다시 지도를 가져오게 하여 자세하게 살펴보았다. 길영수가 황폐된 강북의 백성들 실정을 아뢰니 고종이 당분간 기다리라고 했다. 민용호는 결국 강북과 관련되는 관직을 제수받지 못한 채 연말을 맞았다. 민용호는 길영수에게 해외 여행을 떠날 뜻을 전달하였지만 길영수가 들어주지 않았다. 이에 강북 각 사의 공장과 진에서 사무를 보고 있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낸 후 1901년 정월 보름날 인천에서 화륜선을 타고 상해로 가서, 절강성, 복건성을 구경하고 다시 홍콩(일찍이 천천에 갔을 때 가고 싶어 했음), 베트남, 운남성, 귀주성 등을 돌아본 후 1902년 여름에 귀국했다(8쪽).

민용호가 떠난 직후에 평북관찰사가 된 李道宰가 강북에서 왕씨(왕무충?)라는 자가 일단의 비도를 거느리고 작폐가 심하여 한인의 고난이 큼을 보고 강안의 각 군에 명하여 ‘忠義社’를 조직하여 민병을 모집하고 폭도경비에 임하게 하였다. 충의사의 장인 李澤奎는 金昌壽와 같이 월경하여 서변계의 한인의 관리를 맡은 후에 강북의 한인과 연강의 지방관청[군어]와의 관계가 점점 접근하여 강북 한인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결단하여 원만하게 처리하게 되었다.<sup>90)</sup>

88) 『국역 고종순종실록』에 의하면 현상건은 1899년 8월 17일에 대한국국제를 선포할 당시 법규교정소 위원이었다.

89) 이것은 와전된 사실임이 신문에 보도되었다.

90) 국사편찬위원회, 1966, 『한국독립운동사』 권2, 584~585, 592쪽; 현규환, 1976, 앞의 책, 140쪽.

## 6. 결론

민용호는 강북관리사를 제수받지 못했는데, 1902년에 서상무가 드디어 ‘변계관리사무’로 파견되었다. 시찰의 명칭이 관리로 바뀌는 것은 이범윤의 경우에도 확인된다. 이범윤은 1902년 간도시찰에서 1903년 간도관리사로 승진되었다. 1902년에 집안에 향약소를 설치하면서 의정부참찬 李容泰를 도약장(향약장)에, 서상무를 부약장(부향약장)에 임명하고, 李完求를 파원으로 임명하여 사무를 관장하게 했다.<sup>91)</sup> 서상무는 왕조실록에서 단 한건이 검색되는데 그것은 1903년 6월 18일에 의정부 참정 金奎弘이 제의하기를 “지금 변계관리사무이문 서상무의 보고에 이어 변경 백성들의 신소에 의하면 후창과 초산에서 관찰사가 내린 지시라고 거짓말을 하며 그 지시로 변경을 신척하고는 연변 10개 고을의 연안 지역에 있는 유랑민들을 제멋대로 두 고을에 나누어 소속시키고는 禮木 규정을 나열하였는가 하면 鄉祿錢을 토색질하여 귀화한 변경 백성들이 실망해서 억울한 사정을 호소하게 만들었는데 근거가 명백합니다. 그 죄상을 따져 보면 물론 파면을 시키고 징벌을 하여야 하겠지만 이런 때에 변경 고을의 일을 생소한 사람에게 맡기기는 곤란하니 후창군수 李載植에게 우선 3개월 간의 봉급을 주지 않는 처벌을 적용하고 죄를 진 채로 직무를 수행하게 하며 초산군수 李秉弘도 역시 봉급을 주지 않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한데 대해서 승인을 받았다.<sup>92)</sup>

서상무의 활동이 민용호의 활동과 중첩되어 보인다.<sup>93)</sup> 이범윤은 1904년

91) 현규환, 1976, 앞의 책, 140쪽. 이용태는 1899년 9월 18일에 중추원의관에서 평리원재판장으로 임명되었다가 10월 9일 파면되었다. 1901년 1월 5일 특명전권공사로 미국 주제를, 5월 30일 일본 주제를 명받았다. 1902년 12월 20일에 의정부 찬정에 임명되었다. 1903년 10월 22일에 의정부 참찬에 임명되었다. 1904년 2월 22일에 의정부 찬정에, 5월 2일에 내부대신에, 6월 28일에 중추원 부의장에, 9월 19일에 다시 내부대신에 임명되었다.

92) 『국역고종순종실록』에 의하면 1902년 12월 12일에 의정부 참정 김규홍이 내부대신 사무를 대리하라는 명을 받았다.

93) 1902년에서 1904년까지의 서상무의 활동에 대해서 살펴보자. 1901년에 강계대안 주민 金敎明 등 90여명이 연명으로 내부와 외부에 압록강을 넘어 관원을 파견해 달라고 청원을 했다. “통상의 예를 들으니, 본 국민이 타계에 머무르면, 본국에서 영사사무 등 관을 설치해서 극력 보호하는 것이 공법에 있는 바라고 합니다. …강북에 특별히 사무관을 설치

이후에도 귀국하지 않고 러일전쟁에서 러시아 편에서 참전하였고 이후 연해주에서 의병운동을 전개했다. 반면에 1904년 이후의 서상무의 활동은 잘 알려져 있지 않다.<sup>94)</sup> 민용호의 행적은 더욱 모호하다. 왜 중국남부지역과 홍콩, 베트남 등을 여행한 기록은 남기지 않았는지 궁금하다. 그리고 후손들이 간직하고 있는 교지를 보면 1902년에 위원군수를, 같은 해 12월 비서원승을 역임했다. 그리고 1906년 3월 전판서 민종식이 홍주에서 기병하러 할 때 동참하려 했으나 의병 활동 중에 입은 부상으로 인해서 동참하지 못하고 1906년 10월 낙향하여 무주 구천동에서 여생을 보냈다(8쪽).

의병장 민용호에 관한 연구는 같은 시기의 의병장 류인석에 관한 연구와 비교해서 미약하다. 뿐만 아니라 민용호의 행적 가운데서 의병 시기 이후의 정치적 활동 부분에 대한 연구는 더욱 미약하다. 이것은 민용호가 작성한 『관동창의록』과 비교하여 『강북일기』 부분에 관한 연구가 미약함을 뜻한다. 『강

---

해서...” 1902년에 압록강을 넘어간 조선인의 실정을 시찰한다는 목적으로 서상무를邊界探察官으로 압록강 대안에 건너가게 했다가 청국 ‘嚮匪[嚮馬賊이라고도 함]’에 의해 납치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9월 3일에 후창군 대안 팔도구에서 서상무와 그 종인 김교명 등 15명이 청의 비적에게 납치되었다. 동월 14일에 청군이 비적과 교전하여 서상무와 종인 4명을 구출하여 조선에 송환하였다. 동시에 保正 王寶山이 보고한 바에 따르면 조선인의 공술에 의하면 서상무 등의 월강 조사는 단순한 시찰이 아니라 압록강의 대안에 관청을 설치하기 위한 현지조사였음을 밝히고 항의하였다. 1903년 3월에도 항의가 있었고, 동년 10월에도 납치사건의 수모자의 처형을 통지하면서 한국 관민이 월강하는 것을 엄금하라고 연강의 관청에 훈령을 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서상무는 여전히 압록강 연강에서 활동을 계속했다. 1904년 2월에 러일전쟁이 발발하자, 청측이 2월 29일과 3월 2일에 이범윤[1902년 5월 21일 간도시찰(원)로 임명됨. 청은 통상의 변경관의 왕래와는 다르다는 이유로 항의함. 1903년에는 간도관리사로 승격됨. 병력의 과전을 요청했지만 원수부가 승인하지 않음. 1903년 12월에 현지 주민 한대교, 장봉환이 내부에 청원하기를 이범윤으로 하여금 각지에 私砲隊를 조직하게 하고, 사포대에 탄약을 하사하여 忠義砲로 명명해 줄 것을 청원함]과 서상무의 즉시 소환을 요구하는 조희문을 보냈다. 6월 15일에 조선측의 고계관 겸 경무관 崔南隆, 金炳若과 청 측의 연길부지부 陳作彦, 길강통령 胡殿甲이 광제옥에서 만나서 ‘조청변계선후장정’을 체결했다. 이에 한국 정부는 동월 17일의 각의에서 이범윤을 감계교섭개시까지 소환할 것을 결정하고 이를 주한청국공사에게 통보했다. 秋月望, 2002, 『朝淸邊界問題にみられる朝鮮の‘領域觀’: ‘勘界會談’後から日露戰爭期まで』, 『朝鮮史研究會論文集』 40, 136~143쪽.

94) 서상무는 을사조약 체결 직후에 500여 명의 의병을 모집해 일진회 본부를 타도하러 서울에 들어왔다. 이들은 대안문(大安門)1) 앞에서 일본군과 순검과 일진회 회원들과 붙어 육박전과 투석전을 벌인 뒤 물러났다. 이이화, 2003, 『한국사 이야기 19 : 오백년 왕국의 종말』, 한길사, 170쪽.

『북일기』는 민용호가 1898년 황국협회에 참가하여 독립협회를 공격하였고 그 論功으로 상무사의 간부로 발탁되어 활동한 일을 기록하고 있는데 핵심적인 내용은 그가 평북 도공사원이 되어서 압록강 북안지역인 ‘강북’의 한인을 상민으로 파악하여 ‘商籍’의 형식으로 ‘戶籍’에 수록한 업무를 수행한 것이었다. 이 과정에서 ‘김승수의 난’과 ‘왕국호의 난’을 겪었으며 회인현과 통화현의 지방 관리와 회담하여 한인에 대한 ‘호세’를 폐지시킴으로써 한인을 ‘보호’한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민용호는 ‘수수께끼’의 인물이라고 할 수 있다. 그것은 그의 족보 기록이 모호한 점뿐만 아니라 의병장으로서의 활동을 제외하고서는 그 이전과 이후의 행적이 잘 드러나지 않기 때문이다. 관동창의록 부분(의병장)의 민용호는 많이 알려져 있고 서정일기 부분에서 장수재에서 관동창의록을 집필한 일 등도 알려져 있지만,<sup>95)</sup> 서정일기에서 천진에 갔던 일, 그리고 강북일기에서 황국협회와 상무사에서 활동한 일, 상무사 활동의 하나로 강북에 가서 상무사를 설치한 일은 거의 알려지지 않았다. 그런데 의병장, 황국협회회원, 상무사 도공사원으로 이어지는 민용호의 삶이 통합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 이것은 민용호 삶 자체의 모호성에서도 기인하지만, 의병, 황국협회, 상무사의 흐름에 대한 이해가 약한 데서도 기인한다고 생각된다. 왜 민용호는 의병장 이전 시기와 의병장 이후 시기의 기록은 남기지 않았을까. 특히 상무사 평북 도공사원 이후 시기의 활동이 왜 드러나지 않는지도 궁금하다.

강북일기의 내용도 다른 기록에서는 확인할 수 없다. 이는 상무사의 활동만 보면 그것이 정부의 공식 기관이 아니었기 때문이라는 점에서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강북일기는 그것이 사실인가를 다른 자료를 통해서 확인하기가 어려운 대신에 다른 자료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자료로서는

95) 12월 20일 제천의진 洪選杓과 李肇承이 장수재에 들러 민용호와 상봉했다. 이 날 민용호는 자신의 의병 활동 진말을 초록하여 한 권의 책을 만들었고, 이듬해인 1898년 1월경 朴東欽(박문오의 장남)과 함께 관동창의록 2편을 완성했다. 李肇承, 1993, 앞의 책, 693쪽; 조준희, 2010, 『海山 朴東欽의 항일민족운동』 『승실사학』 24.

충분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 강북일기에 나오는 ‘강북인’들, 곧 김승수, 김정섭, 왕무충, 왕국호 등이 다른 자료에서는 찾아보기가 어려운 인물인 것도 그들이 ‘변경민’이었다는 점에서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sup>96)</sup> 그들은 중앙 정부-또는 국가-의 입장에서는 중요한 인물이 아니었다. 변경은 국가의 권력이 한편으로는 취약한 반면에 다른 한편으로는 침예하게 부딪히는 장소였다. 국가의 권력이 취약하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국가의 착취로부터 벗어난다는 것을 의미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국가의 보호를 받지 못하다는 것을 의미하였다. 그리고 국가의 권력이 충돌하는 것은 변경에 대한 국가의 주권과 변경민에 대한 국가의 주권이라는 이중성과 관련이 있었다. 그리고 이 이중성은 근대의 법률에서 해결될 수 있는 것이었지만 1900년 강북은 아직 근대 세계가 아니었다. ‘강북’에서 출현했던 김승수의 난, 왕국호의 난 등은 강북의 한인(또한 중국인)이 국가, 민족, 지역의 복합적인 관계 속에 놓여 있었음을 나타낸다.

민용호의 강북일기에 나타나는 강북인들의 삶을 1872년에 작성된 ‘강북일기’에 나타나는 강북인들의 그것과 비교해 보자. 한 세대가 지나면서 강북의 변경성이 약화되었다. 1872년에는 강북에는 아직 행정구역조차 설치되지 않았다. 봉서오가 흥경이라는 팔기군의 주둔지가 있었지만 군인(旗人)이 아닌 민간인(民人)의 거주가 허가되지 않았다. 따라서 강북인들은 중국인이건 한국인이건 모두 불법체류자였다. 그들의 세계는 마적의 위협으로부터 국가의 보호를 받지 못하였으며 그들 자신이 마적과 그다지 분화되지 못한 상황이었다. 그들은 자체의 권력을 가지고 있었고 자위를 위한 무기를 가지고 있었다. 권력을 가진 사람은 중국인도 있고 한국인도 있었다. 그러나 영토 자체는 청의 영토라는 것에는 의문이 없었고 따라서 중국인이 한국인보다는 유리하였다.

1900년의 강북의 한인은 한 세대전과 비교하면 훨씬 안정된 생활을 한 것은 틀림이 없었다. 그리고 이 안정된 생활은 한국 정부의 입장에서는 재

96) 충의사의 이택규, 김창수, 향약 파원 이완구 등도 알려지지 않은 인물이다.

정의 한 원천이 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이들에 대한 관할권-‘귀화’-의 행사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곧 한국 정부는 강북의 한인이 중국 정부에 세금을 납부하는 대신에 한국 정부에 세금을 납부하게 하려고 했다. 물론 토지세는 토지 자체가 중국 정부의 관할이므로 당연히 중국 정부에 납부해야 했지만 주민세(戶稅)는 인민 자체가 한국 정부의 관할이므로 당연히 한국 정부에 납부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인민에 대한 관할은 단지 세금 수취에만 있는 것은 아니었다. 인민에 대한 보호를 통해서 강북의 한인이 한국 정부에 충성을 하게 되는 것은 안보의 면에서도 매우 중요하였다. 이 때문에 변경민은 국가의 관할이 취약한 상황에서 ‘식민지’ 상황과 유사하게 이중의 국가의 관할을 받는 상황에 놓일 수 있었다. 그러나 변경은 또 다른 의미에서는 ‘미개척지’였고, 따라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여 ‘개척’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다. 강북의 한인은 변경민으로서 한국 정부와 이중의 관계-보호와 수탈-에 놓여 있었다. 따라서 강북의 중국인과의 이중의 관계-협력과 갈등-에 놓여 있었다. 한국 정부의 수탈에 저항할 때 강북의 중국인은 협력의 대상이 되며, 한국 정부의 보호를 받아들일 때 강북의 중국인들은 갈등의 대상이 되었다.

1872년과 1900년의 또 다른 차이는 청과 조선의 관계였다. 한 세대 사이에 청이 급격하게 쇠퇴하였다. 1894년 청일전쟁이 분기점이었다. 특히 한청 통상조약이 체결된 1898년은 중국이 분할 점령(瓜分)의 위기에 처한 해였고, 러시아의 만주 점령으로 그 위기가 극대화되었다. 한국은 중국에 대해서 역사상 유례 없는 ‘떨시’의 태도를 취하였다. 그것이 1902년 서상무와 이범윤의 파견으로 나타났을 것이다. 1900년 이후 강북에 대한 한국 정부의 행정구역 설치에 러시아가 만주를 점령한 상황에서 가능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행정구역 설치에 반드시 영토에 대한 관할을 목표로 한 것이 아니라 인민에 대한 관할을 목표로 한 것이며, 그 결과는 인민에 대한 보호가 아니라 수탈로 나타날 수도 있었다.

민용호의 강북일기는 바로 ‘한청조약체제’라는 한중관계의 변화 위에서

나타났다. 그러나 1896년까지만 해도 민용호·류인석과 같은 의병장이나 의병장을 지향했던 김구에게 중국은 ‘의병’ 활동을 하는 데서 원조를 구하는 대상이었다. 중국에 대한 멸시 여론은 개화파인 『독립신문』과 독립협회 세력이 선도했다. 민용호는 독립협회와는 반대의 입장에 있었다. 그렇다고 민용호가 류인석과 같은 위정척사의 입장을 견지한 것도 아니었다. 1900년 강북에서 민용호가 실행했던 상무사와 류인석이 실행했던 향약은 하나의 관할의 충돌인 동시에 입장의 충돌이기도 했다. 그러나 보부상 조직인 상무사의 정신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설명하기 어렵다. 그것은 독립협회와 척사유림이라는 두 종류의 시대정신과 비교할 때 모호하기 그지없다. 민용호는 상무사 내에서 보부상 출신들이 중심을 이루고 있었던 南社(南黨)과 근왕주의자 유생을 중심으로 하는 北社(北黨)에 속하였다.<sup>97)</sup>

민용호가 사상적으로 가장 친근했던 관서 화서학파의 주류는 초기에는 위정척사적 입장을 견지하였지만 애국계몽운동 시기에는 애국계몽운동에 참가하였고, 1910년대에는 대한광복회에 참가하였다.<sup>98)</sup> 대한광복회는 의병 활동을 한 사람들이 의병 활동의 경험을 살려서 부호들의 재산을 강탈하는 활동을 통해 군자금을 마련하려고 하였지만(친일부호 처단과 독립운동을 알린다는 선전적인 효과도 가지고 있었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신식 학교를 졸업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商會’를 설립하고 그 인적·물적 네트워크를 통해서 독립운동의 인적·물적 자원을 확장해 가려고 했다는 점에서, 전통과 근대가 섞여 있는 양상을 보인다. 이것은 또 하나의 근대화와 독립운동의 길로서의 의미를 가졌을 것이다.

그렇다면 민용호가 강북 한인들에게 미친 영향은 무엇이었을까. 민용호 자신은 김승수와 이광하를 비교하면서 김승수의 편에 서 있었다. 그것이 무

97) 『關東倡義錄』, 120~121쪽.

98) 대표적인 개화파적인 인물은 박은식이었다. 관서 화서학파의 주류에 속하는 박동흙은 관동장외록을 편찬할 때 제목을 ‘존주록’으로 할 것을 주장할 정도로 위정척사적 입장을 가지고 있었지만 1908년 8월(제20회)에 신입회원 명단에 이름을 올려놓았다. 동생 박원흙도 1909년 7월(제31회)에 신입회원이 되었다. 조준희, 2010, 앞의 글, 56쪽.

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것은 이 한편의 글로서는 설명할 수는 없다(마찬가지로 김구가 ‘김이언 의병’에 참가한 것이 어떤 의미를 가졌던가를 질문할 수도 있다). 그러나 적어도 민용호의 강북행과 강북민과의 만남은 이후 한국의 디아스포라의 역사와 독립운동의 역사에서 중요한 사건이었다고는 할 수 있을 것이다.

강북일기가 강북의 한인에 대한 중요한 자료인 점은 분명하다. 강북의 한인에 대한 일본인의 저서-출처를 밝히지 않은-가 인용되기만 하는 상황에서 강북일기의 자료적 가치는 더욱 강조해야 마땅하다. 다만 다른 자료가 없다는 점에서 강북일기의 자료는 신빙성이 문제될 수 있다.<sup>99)</sup> 이 연구는 강북일기의 자료를 가지고 이차적인 자료들을 비교해 보려고 했지만 자료의 부족으로 명확한 결론을 내릴 수는 없었다. 그러나 적어도 기존의 이차 자료에 대해서 조심스러운 인용이 필요함을 밝혔다. 그리고 ‘강북일기’ 읽기를 통해서 강북 한인을 ‘영토’라는 관점에서가 아니라 ‘인민’이라는 관점에서, 그리고 강북의 영토성이 아니라 변경성을 강조하는 입장, 다시 말하면 강북의 한인을 변경민이라는 입장에서 바라볼 수 있었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를 찾고자 한다.

투고일 : 2013년 6월 10일, 심사완료일 : 2013년 6월 18일, 게재확정일 : 2013년 6월 20일

99) 민용호가 강북행을 선택한 것은 ‘두 번째 벼슬길을 찾기 위한 것’이었다. 이 점에서 민용호의 강북행이 과장되었을 것이라는 의심을 살 수 있다. 그러나 강북일기 자체의 디테일한 서술을 보면 과장은 있을 수 있지만 조작과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한다. 다른 자료와 교차 검증해본 결과도 마찬가지이다.

## 참고문헌

- N. G. 가린, 김학수 역, 1881, 『조선, 1898년 : N. G. 가린의 조선풍물여행기(하)』, 단  
대출판부
- 구범진, 2006, 「‘한청통상조약’ 일부 조문 해석을 둘러싼 한-청의 외교 분쟁」 『대구  
사학』 83
- 국사편찬위원회, 1966, 『한국독립운동사』 권2
- 김구, 도진순 주해, 1997, 『백범일지』, 돌베개
- 김득황, 1973, 「간도영유권 분쟁시기에 있어서 청의 서간도 개발경영」 『백산학보』  
15
- 류승주, 1978, 「조선후기 서간도이주민에 대한 일고찰 : ‘강북일기’의 해제에 붙여」  
『아세아연구』 21-1
- 柳麟錫, 1989, 『昭義新編』. 중앙출판문화사
- 閔龍鎬, 1984, 「江北日記」 『關東倡義錄』, 국사편찬위원회
- 민용호, 이태길·민원식 역, 1988, 『국역 복재집』, 소암출판사
- 박민영, 1990, 「강릉의병장 민용호의 생애와 거의 논리」 『윤병석교수회갑기념 한국  
근대사논총』, 지식산업사
- 박민영, 1991, 「민용호의 강릉의병 항전에 대한 연구」 『한국민족운동사연구』 5
- 박민영, 1998, 『대한제국기 의병연구』, 한울
- 박민영, 2002, 「류인석의 국외 항일투쟁노정(1896~1915) : 러시아연해주를 중심으로」  
『의암학연구』 1
- 서울대학교 규장각, 2009, 「변계호적성책[마이크로자료] : 변계호적안」
- 서진교, 1992, 「1898년 도약소의 성립과 활동」 『진단학보』 73
- 서진교, 1999, 「대한제국기 상무사의 조직과 활동」 『한국민족운동사연구』 21
- 손춘일, 1997, 「청대 강북의 개척과 한인에 대한 토지정책」 『청제사학』 13
- 원호처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3, 『독립운동사 제5권 : 독립군전투사』, 독립유공  
자사업기금운용위원회
- 은정태, 2005, 「1899년 한청통상조약 체결과 대한제국」 『역사학보』 186
- 은정태, 2007, 「대한제국기 ‘간도’ 문제의 추이와 ‘식민화」 『역사문제연구』 17
- 의암학회, 2006, 『국역 소의신편』
- 이동진, 2005, 「1872년 ‘강북’의 조선인 사회 : ‘강북일기’에 나타나는 민족, 국가, 지  
역」 『북방사논총』 8
- 이상찬, 1997, 「1896년 의병장 민용호의 실제」 『규장각』 20
- 이상찬, 1999, 「대한제국시기 보부상의 정치적 진출 배경」 『한국문화』 23
- 이상찬, 2003, 「대한제국기 정치지배세력의 정국운영」 『한국근현대사연구』 26

- 이승렬, 2004, 「한말 은행가 집단의 형성과 광무정권」 『동방학지』 124
- 이이화, 2003, 『한국사 이야기 19 : 오백년 왕국의 종말』, 한길사
- 李肇承, 1993, 「西行日記」 『湖西義兵史蹟』, 수서원(이구영 편역, 1994, 제천시문화원)
- 일본외무성육해군성 편, 1989, 『일본의 한국침략사료총서 총편』 4, 한국출판원
- 임학성, 1989, 「20세기 초 서간도지방 조선인의 거주 양태 : ‘변계호적’ 자료의 분석 사례」 『한국학연구』 21
- 정성원 외, 2002, 『제천의병의 이념적 기반과 전개』, 이회문화사
- 조선총독부, 1971, 「국경지방복명서」 『백산학보』 11
- 조재곤, 1988, 「대한제국 말기(1904-1910) 보부상 단체의 동향」 『북악사론』 5
- 조준희, 2010, 「海山 朴東欽의 항일민족운동」 『승실사학』 24
- 최종범, 최강현 역주, 2004, 『간도개척비사 : 강북일기』, 신성출판사
- 편집부 편, 1994, 『강북일기 · 강좌여지기 · 아국여지도』, 한국정신문화연구원
- 현규환, 1967, 『韓國流移民史』 上, 어문각
- 民政部總務司調査課 編, 『在滿朝鮮人事情』, 1933
- 牛丸潤亮 · 村田懋麿 共編, 2002(1927), 『最近間島事情 附 露支移住鮮人發達史』, 龍溪書  
舎(復刻版, 朝鮮及朝鮮人社)
- 在滿日本大使館 編, 『在滿朝鮮人概況』, 1935
- 秋月望, 1989, 「朝中勘界交渉の發端と展開 : 朝鮮側の理念と論理」 『朝鮮學報』 132
- 秋月望, 2002, 「朝清邊界問題にみられる朝鮮の‘領域觀’ : ‘勘界會談’後から日露戰爭期まで」  
『朝鮮史研究會論文集』 40

## ■ Abstract ■

## The Koreans in ‘Gangbuk(the Northern Region of Yalu River)’

–Frontier and Frontier People in the ‘Gangbuk Diary’ –

Lee, Dong-Jin

Min Yong-ho, the leader of a Righteous Army unit, a guerilla unit against the Japanese police and army, participated as a high member in Sangmusa, a paddler group set up in 1899. His stay and experience in the northern region of the Yalu river (the Ganbuk area) recognized useful to naturalize the Koreans in that area, he was appointed as a manager of the Pyungan-bukdo branch of Sangmusa. In 1900, he established a main office in the Pyungan-bukdo and its branches in the counties of the province as well as sixteen branches in the Gangbuk area, during which he happened to solve Kim Sung-su’s Uprising.

The uprising had been originated from the conflicts between Kim Sung-su, who had gained the public trust as an assigned manager of Sangmusa, and Lee Gwang-ha, the government official of Gangbuk, who had not won their trust. This event shows that the Koreans in Gangbuk area were not so much protected as exploited by the then Korean government--at least the authorities having jurisdiction over the area. Repudiating the tax imposed on the korean households, Min Young-ho proved that he was different from the existing officials sent by the government.

That doesn’t mean that he didn’t exploit them. He also collected money with setting up Sanmusa as an excuse, which was needed for the operation of the organization. Any data on the fact that he put the Koreans of Gaungbuk araea on the family register as a form of commercial directory or other data with the fact in them have not been found. But still the circumstances where he was as-

signed to the area was certain : It was true that at that time Sangmusa was active as a quasi-governmental organization and that the officials of the Korean government were sent to the area to administer the Koreans in the area. This was to realize the consular jurisdiction rights recognized in the Commercial Treaty between Korea and China. Due to the colonial circumstances of Korea, this problem became one between China and Japan. As such, Gaungbuk Diary witnesses that the Koreans in the Gangbuk frontier were in the fluid situations where state, nation and region were overlapped.